

정책연구 2006-19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06.12

제주발전연구원

발 간 사

지난 7월 통계청은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처음으로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국가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7위로 OECD국가 평균 59.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우선 문화적 요인을 꼽는다면 많은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인식과 제도적인 요인으로 여성의 사회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육시설 등 돌봄기능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사회 구조에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면 출산, 육아, 가사 등 전반적인 일을 혼자서 해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4년 조사 발표된 한국 성인 남성 20세에서 74세의 가사노동시간이 평균 46분으로 여성의 4시간 9분에 비하면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미국 남성은 2시간 22분, 독일 남성은 2시간 43분등 우리나라 남성의 3~4배이상이나 높은 비율입니다. 결국 여성의 좋은 자원이 일과 가사 일중압감으로,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의 포기과 그로 인한 국가의 손실 발생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줄어들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에 새로운 활력으로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 방안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는 많은 연구들이 여성의 지위 향상은 물론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2006. 12.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고 부 언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기대효과	2

II. 여성의 사회참여 배경

1. 사회참여 의미	3
1) 여성의 사회참여 과정	4
2) 정치부문	5
3) 경제부문	7
4) 자원활동 부문	9
2. 여성 사회참여의 기대 효과	10

III. 제주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

1. 정치부문	12
2. 경제부문	21
3. 자원봉사·단체 활동 부문	27

IV. 보육실태

1. 여성사회 참여를 위한 보육 실태	33
1) 여성의 현실	33
2. 보육과 육아지원제도	38
3. 모성보호 강화	43
4. 아동양육지원	48

V. 정책제언

1) 정치부문의 여성참여를 위한 제언	54
2) 경제부문의 여성참여를 위한 제언	55
3) 자원봉사·단체 활동 부문의 여성참여를 위한 제언	56

참고문헌	58
------------	----

부록1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9
--	----

부록2 영유아보육법	78
------------------	----

표 목 차

〈표 1〉문명사에 따른 사회구성원리	4
〈표 2〉성 및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10
〈표 3〉제4회 지방자치선거 성별 선거인수	12
〈표 4〉2006년 지방선거 투표상황	13
〈표 5〉제4회 지방선거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13
〈표 6〉제17대 국회의원 입후보 및 당선자 현황	14
〈표 7〉제4회 지방선거 성별·연령대별·도 투표율	14
〈표 8〉성별 주요정당의 고위 공직자 수	15
〈표 9〉여성관리자 임용현황	16
〈표10〉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16
〈표11〉제주도 여성 공무원 현황	16
〈표12〉제주도 여성공무원 연령별 현황	17
〈표13〉주요 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17
〈표14〉여성공무원 배치 현황	18
〈표15〉2005년 여성 관리직 시도별 목표 대비 실적	19
〈표16〉제주도 여성 통·리장 현황	20
〈표17〉여성위원 위촉 및 활동 지원 현황	21
〈표18〉경제활동인구 총괄	21
〈표19〉연령별 취업자 수	22
〈표20〉교육정도별 취업자	23
〈표21〉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제주)	24
〈표22〉직종 중분류별 비정규직 상위직종과 여성우위직종 비교	25
〈표23〉제주도 노동조합 현황	26

〈표24〉맞벌이 및 비맞벌이 가구의 남녀노동시간	26
〈표25〉자원봉사자 등록현황	28
〈표26〉자원봉사자 직업별 현황	28
〈표27〉자원봉사활동실적	29
〈표28〉고정 자원봉사 수요자와 자원봉사자의 연계실적	29
〈표29〉제주도 여성단체 현황	30
〈표30〉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참가율	34
〈표31〉결혼에 대한 견해	34
〈표32〉성별 근속년수별 근로자 구성비	36
〈표33〉여성의 취업에 관한 태도	36
〈표34〉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중단 경험 여부 및 이유	37
〈표35〉여성의 취업장애요인	37
〈표36〉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검토 내용	39
〈표37〉보육시설 유형별 현황	41
〈표38〉산전후휴가급여 실시 현황	44
〈표39〉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45
〈표40〉공무원 연도별 육아휴직 이용현황	46
〈표41〉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 출산율	47
〈표42〉방과후 활동 운영현황	49
〈표43〉지역아동센터운영현황	50
〈표44〉수능 공부방 운영현황	50
〈표45〉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51
〈표46〉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가 유형별 현황	51

그림 목 차

<그림 1>사회참여 개념	3
<그림 2>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8
<그림 3>제주도 여성공무원 연령별 현황	17
<그림 4>연령별 취업자	22
<그림 5>교육정도별 남·여 취업자	23
<그림 6>여성 노동시장 분석틀	27
<그림 7>연령별 결혼에 대한 견해(2002년)	35
<그림 8>학력별 결혼에 대한 견해(2002년)	35
<그림 9>제주특별자치도 보육 발전 목표	40
<그림10>직장보육서비스 지원제도	42
<그림11>산전후휴가 지급 인원	44
<그림12>육아휴직 지급 인원	45
<그림13>연도별 육아휴직 이용 현황	46
<그림14>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 출산율	4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예언되었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여성의 사회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6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또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돌봄의 사회화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적극적인 조치나 할당제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들과 돌봄의 사회화 등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사회참여는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여성의 비정규직화, 여성 신빈곤층의 급증, 홀로 사는 여성 노인 증가, 가정과 일의 양립에 따른 여성의 부담 가중,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 제도나 관습이 여성의 사회참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반영은 UNDP의 인간개발지수 보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남녀평등지수(GDI) 25위, 여성권한척도(GEM) 53위는 양성평등을 위해 제도적·사회적 많은 변화에 주력해왔음에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은 지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현재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만혼화, 독신화, 기혼 여성의 출산기피, 이혼 등의 가족 구조 해체, 맞벌이 부부의 증가, 도시집중화와 자녀 교육비 상승 등 가족·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사회 변화는 자녀 학대, 가족학대, 저출산의 여성 책임, 고령화에 따른 부양문제 등 전통적으로 인식된 여성의 역할이 붕괴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여성의 사회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은 다시 악순환을 낳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기반을 마련해야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 파악,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 여건 파악,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은 결혼·출산·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는 비율이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증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 체계 마련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보육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주새싹플랜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여성의 사회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여성 인력교육과 여성의 교양 전문 교육 등 여성의 사회교육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은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검토와 함께 실태를 파악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 해 볼 수 있다.

우선, 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보육 실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셋째, 여성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굴 할 수 있다.

II. 여성의 사회 참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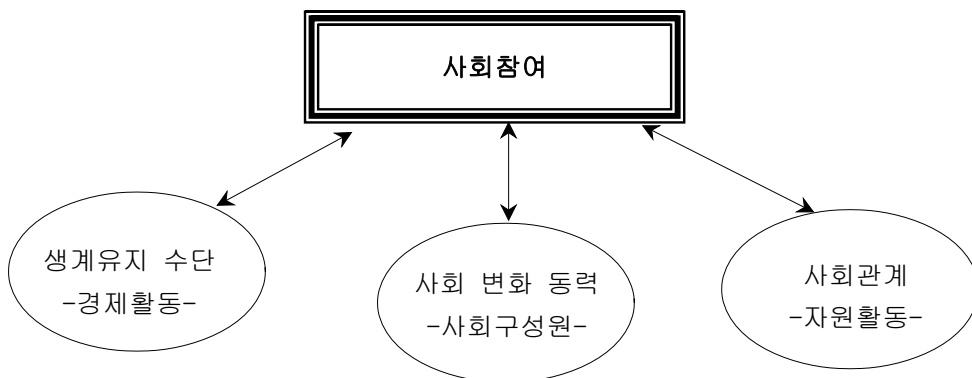
1. 사회참여의 의미

사회참여는 19세기 말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자발적 결사체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개념이다. “시민사회, 지역사회 혹은 공공행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행동을 공유하는 것”을 사회참여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참여는 참여 수준에 따라 공식적 참여, 준공식적 참여, 비공식적 참여로 나눌 수 있다. 공식참여는 시민사회, 지역사회 혹은 공공행동에 정식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Full-time 참여를 의미한다. 비공식참여는 가족 이외의 조직체의 정식 성원으로 Part-time의 신분을 말한다. 비공식 참여는 조직체의 정식 성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신분의 참여를 말한다.

이를 다시 기능적인 분류를 해보면 하나는 지불되는 노동의 대가(임노동)를 통해 생계유지 수단이 되며, 수행하는 업무는 전체 사회의 운영 방향과 내용에 관여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성원으로 존재의 확인이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사회관계를 통해 사회적 동물이 되는 것이다.

〈그림 1〉 사회참여 개념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최근 사회참여는 지방자치화로 주민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는 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은 많은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비정규직, 자원봉사 등 통계상에 집계되지 않는 영역의 참가를 주로 하고 있다.

1) 여성의 사회참여 과정

여성의 사회참여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욱 본격화 되는 계기를 맞았다. 각 시대별 사회구성원리는 <표1>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1> 문명사에 따른 사회구성원리

구분 \ 시기별	수렵채취사회	농경사회	산업혁명	정보화사회
생산성·생산방식	자연 채취·수렵	토지·농경 1차산업	자본·제조·기술 2차산업	정보화 3차산업
사회관계	가족	소규모·분산	대규모·집합	세계적
개인과 국가관계	-	통제관계	관리관계	후견관계
사회질서기반	가족윤리	개인윤리	공공윤리	자발적·자율적
개인과 집단관계	가족내 서열상	집단주의 비공식	개인주의 합리적	수평관계
사회중심	남성	남성	남성	양성

수렵채취사회와 농경사회는 공공조직체와 사적 조직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논의되는 공식적 사회참여는 없었다. 여기서 가족은 생산집단이면서 소비집단이었다. 생산의 기반은 토지에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참여가 이루어졌다. 산업혁명 이전은 결국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한 모두가 수렵이나 농업에 종사를 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사회참여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여성의 참여문제는 산업사회에 이르러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산업사회는 생산의 기반이 토지에서 자본과 기술로 이전되고, 사회구조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공적인 조직체가 늘어나고 사적인 조직체 또한 많이 출현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둘째,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 활동과 달리 기술과 자본의 도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을 확연하게 하였다.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구분됨으로써 가장 혼자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으며, 여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생산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함께 노동을 하던 농경사회까지의 생활양식과 산업사회부터 형성된 관계는 가족관계에 있어 권력이 경제력에 의하여 좌우되기 시작하였다. 가정 내 생계수단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부여되기 시작했으며, 전통적인 성 역할의 이분화가 무너지고 모든 영역에서 공동 수행의 역할 분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서구에 있어서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00년대에 들어서 여성에게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변화를 촉진시킨 계기가 바로 정보화사회의 등장이었다. 정보화사회는 정보이용능력에 따라 생산성이 결정된다. 사회구성 원리는 기존의 성별에 따른 지배형태가 남녀라는 성별을 벗어나 정보이용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기계적 관계로 준공식적·비공식적 참여의 유형으로 전환되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2) 정치 부문

여성의 사회 참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나 가장 미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정치참여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생겨난 대표적인 운동은 참정권 운동으로 페미니즘 1세대인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주창되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영국, 미국의 참정권 노력에 대한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 참정권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프랑스이다. 1789년 프랑스혁명이 일어나면서 T.메리콥트와 R.라콤트가 국민의회에 ‘정치상 남녀가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건의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다수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국민의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793년 국민공회는 여성의 집회를 금지시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고, 모든 여성단체를 해체시켰다. 여성운동가였던 구즈는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는 유명한 말과 함께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다.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던 여성들이 프랑스혁명에 참가하여 투옥됨으로써 여성 참정권운동은 좌절되었다. 그 후 프랑스의 여성참정권운동은 19세기 말에 영국과 미국의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아 다시 활발해졌다. 결국 여성운동이 시작된 지 1세기 반 만인 1946년에 법률상 여성참정권이 보장되었다.

프랑스의 영향은 영국에도 미쳤다. 1897년 여성참정권협회국민동맹(National Union of Women's Suffrage Societies)이라는 단체가 설립되어, 이를 중심으로 하원에서 여성 참정권을 목적으로 하는 입헌운동을 전개하였다. 1903년에 여성사회정치동맹(Women's Social and Political Union)이 결성되고 1918년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는 ‘국민대표법’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국의회의 여성참정권 인정은 그 후 세계 각국에 영향을 끼쳤고, 영국의회주의도 내실을 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에 의한 여성 선거권은 남성 선거권에 비해 상당한 제한을 두고 마련 된 것으로 모든 여성들에게 동등한 권한이 부여 된 것은 1928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영국의 한 유명한 남성은 “영국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 올 생각이 없다면 그런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혁명을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그는 결국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정치를 시시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가족의 안정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는 비록 여성의 사회 참여 인정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가정의 붕괴로 연결된다는 전통적 관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19세기까지 흑인노예제도가 존재하였으며,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여성의 참정권운동은 인간해방운동과 더불어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1848년 최초로 여권대회가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1869년에는 전국여성참정권협회와 미국 여성참정권협회가 각각 조직되어, 의회에 <여성참정권법안>을 제출하는 등 체계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다. 두 조직은 1890년 전미국여성참정권협회로 통합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하였다. 1869년 와이오밍주(州), 1890년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캔자스주, 오리건주, 1893년 콜로라도주, 1896년 아이다호주, 유타주 등 차례로 여성참정권이 인정되면서 연방정부의 법 개정을 최종 목표로 참정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연방정부의 헌법수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됨으로써 1920년 21세 이상의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성의 참정권 운동은 지난(至難)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1893년 여성에게 가장 먼저 참정권이 부여되었고¹⁾, 참정권 운동이 일어난 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가 존재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전히 불평등한 실정이다.

3) 경제 부문

경제 분야는 정치 다음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며, 1990년 49%의 정체수준에서 2005년 50%를 넘어선 것으로 15세 이상의 여성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은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중졸이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아 특이하게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률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것은 선진국과 비교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특성의 하나이다. 여성의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70%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선진국과 뚜렷하게 비교될 수 있다. 여성의 참여가 높은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1990년 중반부터 2000년 중반 56.7%에서 70.7%로 증가하였으며, 스웨덴은 69.1%에서 80.1%, 미국은 53.7%에서 63%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남성에 비하여 낮은 이유로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 육아와 결부되어 어머니로서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성의 시간은 여성의 임금과 결부되므로 여성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 등 대체인력이 필요하며 이는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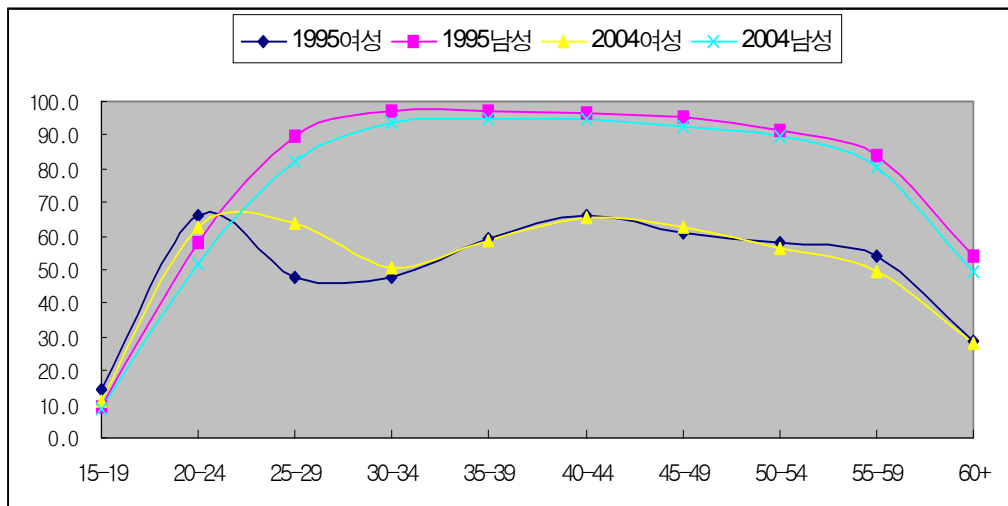
1) IPU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에 대한 연혁을 조사해서 발표하였다. 1893년 뉴질랜드, 1917년 캐나다, 1920년 미국, 1930년 터키, 1935년 미얀마, 1937년 필리핀, 1939년 엘살바도르, 1945년 일본, 이탈리아, 1946년 북한, 1947년 멕시코, 1948년 한국, 1950년 인도, 1954년 브라질, 1957년 말레이시아, 1972년 방글라데시, 1980년 이라크, 1990년 사모아, 1993년 카자흐스탄, 1994년 남아프리카(흑인), 2005년 쿠웨이트 등 최근까지도 여성의 참정권을 얻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성의 임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형은 전형적으로 M형을 남성은 U형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여성은 20대 중반까지 상승하고 30-34세에 빠른 감소와 그 후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다. 혼인형태별로 보면 여성은 별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나 학력에 따라 연령별로 구분하면 미혼 여성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높고 유배우가 있는 경우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여성통계연보 2005, 재구성
 원자료 :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199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1996,2005)

여기서 여성의 사회활동 가운데 경제활동에 중점을 우선 두는 것은 기회와 양육지원 체계의 성격을 평가하고 유형화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왔다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Gauthier(1996)에 의하면 국가의 양육지원체계와 여성경제활동지원체계는 인구의 증감현상과 이에 대한 국가의 태도, 경제의 조직원리와 경기 변화, 그리고 성역할의 분리 또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출산장려주의 모델(pro-natalist model:프랑스),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를 강화하는 전통주의 모델(pro-traditional model:독일), 평등주의 모델(pro-egalitarian model:스웨덴), 비개입주의모델(non-interventionist model:영국)로 구분을 시도하였다.

Gauthier이외에 Lewis(1992), Orloff(1993), Sainsbury(1994, 1996:1999)등이 이와같은 견해를 주장하였다. 결국 이들이 보는 여성의 경제 부분의 참여는 양육 지원과 가족복지의 체계에 따라 확대 여부를 발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출산이 상호 대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돌봄의 사회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 자원활동 부문

자원활동분야 역시 여성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성의 참여는 성역할에 기반 한 확장 영역에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여성의 활동영역은 돌봄영역의 확장선상에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자발적이며 무보수로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대상들을 육체적·사회적 조건을 개선·재건하는 작업을 하며 반대급부 없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는 인간애가 바탕이 되어 자선 또는 구호중심의 활동을 전개하여 왔지만, 오늘날 산업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결국 국가가 담당 할 수 없는 많은 비복지적인 부분에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사회복지 욕구대상이 확대되는 등 국가책임의 사회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국가가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핵가족화로 인한 공동체의식, 연대감 상실을 극복하고 공동체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생활연건의 변화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람 되게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는 복지시설에 대한 활동을 주로 하게 되므로 남성의 환경보전 활동과 비교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은 남성의 경우 자녀돌보기가 가장 낮은 비율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표 2〉 성 및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

성, 연령			현재활동					
			환경보전	국가, 지역행사	자녀교육	복지시설	재해돕기	기타
1999	계	13	40.1	8.1	12.3	34.2	8.7	11.8
	여성	13.8	34.8	5.8	20.5	40.7	4.6	7.5
	남성	12.2	46.4	10.9	2.5	26.5	13.6	16.9
2003	계	14.6	38.0	10.4	8.7	38.4	10.0	14.9
	여성	14.1	31.4	8.6	14.1	46.9	5.4	11.4
	남성	15.1	44.5	12.2	3.4	29.9	14.4	18.3

출처: 여성통계연보 2005.

이러한 사회참여의 영역을 바탕으로 제주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여성사회 참여의 기대 효과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에 거는 기대효과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와 함께 등장하였다. 인구학적으로 급변화하는 환경은 인력수급과 관련된 노동구조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으로서 여성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80년대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정부주도로 1962년부터 이루어진 가족계획 사업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던 1990년 초반까지 이루어졌다. 그와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증가, 가치관의 변화로 1960년 6.0명에 이르던 합계 출산율이 1970년 4.53명으로 낮아졌고, 1983년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인 2.08명까지 낮아졌으며, 2006년 발표된 2005년 합계출산율은 급기야 1.08명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UN평균 2.6명 보다 낮으며 미국 2.05명(2004년 기준), 프랑스 1.90명, 영국 1.74명 등 선진국 합계출산율인 1.57명 보다 낮으며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0.95명의 흥

콩, 마카오와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극저출산²⁾의 수준에 머물게 됨으로 1955년부터 1963년 베이비붐 세대와 2001년 초저출산세대가 만나는 2020년은 인구 둔화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다.

특히, 저출산에 대한 논의에서 지금까지 여성의 출산력에만 많은 집중이 되어왔다. 실질적으로 초혼연령 상승에 따른 자녀출산 감소가 저출산의 현 시점에서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또한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성 역할”에 따라 성별간 불평등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재생산되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와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아이들의 양육과 노인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여성의 일로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 여성의 사회참여는 더 많은 여성의 활동을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본 논의는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 수준을 살펴보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하며 어떠한 수준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2)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3명 보다 낮을 때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 이후부터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하였으며 2005년 1.08명의 합계출산율이 보고됨에 따라 극초저출산국가로 불리고 있다.

Ⅲ. 제주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

1. 정치부문

여성의 정치참여란 일반 대중여성들의 정치의식·사회적의식·역사의식 등을 고양시키고 여성정치지도자를 양성하여 입법부는 물론 행정 각 부서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다각도로 논의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와 지도자로서의 정치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20세기 초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여성의 참여는 여전히 열세인 실정이다. 이는 권력구조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원에 여성이 여전히 소수인 것을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권력구조에서 말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구성원을 공식적인 주체로 본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고급 행정 각료를 포함하고, 비공식 주체로는 이익집단, 정당, 언론기관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국민을 들 수 있다. 결국 여성의 공식적 주체로서 정치참여는 출발에서부터 미진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지난 5월31일 실시된 지방자치선거에 있어 여성 선거인은 전체 투표자수의 51.1%로 남성 투표자수 48.9%보다 2.2%가 많다.

〈표 3〉 제4회 지방자치선거 성별 선거인수

(단위 : 명, %)

구분	인구수	선거인수	전국대비	선거인수비율	여자선거인수	남자선거인수
제주도	558,455	411,862	1.1	73.8	210,658	201,204
전국	45,855,598	37,064,282	100	75.9	18,823,089	18,241,193

출처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Ⅲ. 제주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 ◇

〈표 4〉 2006년 지방선거 투표상황

(단위 : 명)

구분	투표구수	인구수	세대수	선거인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여	남	계			
제주시	87	306,353	111,511	113,386	105,382	(6,010) 218,768	138,717	80,051	63.4
서귀포시	35	82,897	30,661	31,557	30,661	(1,882),6 2,209	43,561	18,648	70.0
북제주군	51	96,200	36,680	37,447	36,680	(1,908) 74,387	51,650	22,737	69.2
남제주군	55	72,005	27,002	28,268	27,002	(1,420) 56,498	43,075	13,423	76.2
계	249	558,455	205,854	210,658	201,204	(11,220) 411,862	277,003	134,859	67.3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 위원회 <http://jj.election.go.kr/sub/index.php?mid=021303>
 비교 : 전국 투표 평균 투표율 : 51.6%

제4회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입후보자 및 당선자 수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살펴 보면 전국 당선자 비율과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에 있어 여성의 원의 경우 모두 선출직이 아닌 비례직으로 자발적 정치참여 수준은 훨씬 더 열악한 실정이다.

〈표 5〉 제4회 지방선거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 후보자	여성 후보자	자치단체 현황						정수	여성 당선자	비율
			도지사		도의원		비례대표				
			여	남	여	남	여	남			
제주도	143	14 (9.8%)	-	3 (1)	4	104 (29)	10 (5)	8 (2)	42	0	0
전국	12,227	1,411 (11.5%)	4	62	107	1,961	136	75	3,872	528	13.6

출처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의원 등 포함

** ()는 당선자 수

현재 17대 국회의원 총 299명 중 여성의원은 39명으로 13.4%를 차지한다. 지난 16대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의 5.86%를 감안하면 2배이상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비례대표에 있어 여성에게 할 수분과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며, 지역구를 통해 선출된 의원이 10명으로 비례대표 29명의 당선을 통해 여성 의원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3.4%로 IPU(국제의원연맹) 187개국 가운데 73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17대 국회의원 입후보 및 당선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입후보자		당선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17대 국회의원	2002년	제주	11	0	3	0
		전국	1,175	66	243	10

출처 :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지표개발 2005.

이렇게 선출직·비례대표직 당선 여성의 비율이 낮음에도 여성의 투표율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7〉 제4회 지방선거 성별·연령대별·도 투표율

(단위 : 명, %)

구분	전체		19세		20대		30대		40대 이상					
	여자	남자	소계	여자	남자	소계	여자	남자	소계	여자	남자			
제주도	66.2	67.5	52.0	47.7	56.0	50.1	46.2	53.8	59.3	60.0	58.6	76.7	75.7	77.8
전국	51.9	52.3	37.9	34.2	41.3	33.8	31.6	35.8	41.4	44.5	38.5	63.8	62.4	65.4

출처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

지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여성 후보의 추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회 지방선거의 경우 전체의 2.3%인 239명 추천, 제3회 3.6%의 394명, 제4회는 11.5%인 1,411명으로 추천이 집계되었다. 이러한 증가를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2002년 2월 「정당법」 개정 영향이다. 정당이 국회 및 시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에 여성을 30%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여성공천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 3월 7일 개정된 공직자선거법에서 비례대표 추천에 있어

Ⅲ. 제주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 ◇

시·도의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2인마다 여성1인의 추천이 명시되어있다. 특히, 지난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 시·도의원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에 있어서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50%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후보자에 있어 매 홀수마다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경우 여성을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특히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시·도의원 여성추천 비율인 50%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무효화하고, 여성 후보자의 추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구 지방의원 여성추천비율에 따라 여성 추천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낮은 요인 중에 하나로 정당 내에 고위당직자 역시 여성 고위당직자는 비율이 낮다.

〈표 8〉 성별 주요정당의 고위공직자 수

(단위 : 명, %)

연도, 성	여당		제1야당		
	당무위원수	지구당위원장수	당무위원수	지구당위원장수	
1995	계	45	237	55	-
	여성	2	2	4	-
	여성비율	4.4	0.8	7.2	-
2000	계	41	225	55	225
	여성	6	6	3	5
	여성비율	14.6	2.7	5.5	2.2
2004	계	76	-	51	-
	여성	16	-	10	-
	여성비율	21.1	-	19.6	-

출처 : 2005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재구성

비고: 여당(열린우리당)의 당무위원은 중앙위원, 제1야당(한나라당)의 당무위원은 운영위원임.

제주도내 여성공무원의 실태를 보면 여성공무원은 1,045명으로 전체 공무원 4,425명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청 268명으로 전체 1,573명의 17%, 시·군은 777명으로 2,852명의 27.2%이다. 직급별로 5급 이상은 20명으로 일반직 14명, 별정직 3명, 연구·지도 3명으로 5%이며, 6급 이하는 723명으로 일반직 642명, 별정직 48명, 연구·지도직 33명으로 29.6%이다. 기능직 251명, 기타 소방직 38명, 계약직 13명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표 9〉 여성 관리자 임용현황

(단위 : 명)

개요	2003	2004	2006	2006
5급이상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비율	9/237 (3.8)	118/245 (4.5)	13/295 (4.4)	23/435 (5.3)
과장급이상 고위직에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4/70 (5.7)	4/73 (5.5)	4/78 (5.1)	4/120 (3.3)
개방형 및 별정 직위에 여성공무원임용확대	3/15 (20)	2/14 (14.2)	1/12 (8.3)	2/16 (12.5)

중앙인사위원회에 보고 자료(2006.6.30)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은 268,537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72,951명으로 1997년 20.7%에서 2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 1만5천890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715명으로 5%를 차지하고 있다. 양성 평등을 위하여 정부는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을 10%(1천430여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표10〉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증감)	285,899	269,908 (-16,991)	268,426 (-12,482)	248,515 (-7,911)	243,859 (-4,656)	245,031 (+ 1,172)	248,524 (+ 3,493)	256,424 (+ 7,990)	266,176 (+ 9,752)
여성 (증감)	59,336	57,933 (-1,403)	55,831 (-2,102)	55,002 (-829)	54,771 (-231)	56,728 (+ 1,957)	59,748 (+ 3,020)	64,683 (+ 4,935)	70,568 (+ 5,885)
여성비율 (증감)	20.7%	21.5% (+ 0.8)	21.8% (+ 0.3)	22.1% (+ 0.3)	22.5% (+ 0.4)	23.2% (+ 0.7)	24.0% (+ 0.8)	25.2% (+ 1.2)	26.5% (+ 1.3)

출처 : 행정자치부. 여성공무원 현황(2006. 6.30. 기준)

〈표11〉 제주도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도	시	군	읍	면	동
제주도	1,132	296 (26.1)	318 (51.0)	259	67	24	168
전국	70,568	4,104	17,698	10,817	1,760	5,042	10,893

출처 : 행정자치부. 여성공무원 현황(2006. 6.30. 기준)

제주도 여성공무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31~40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Ⅲ. 제주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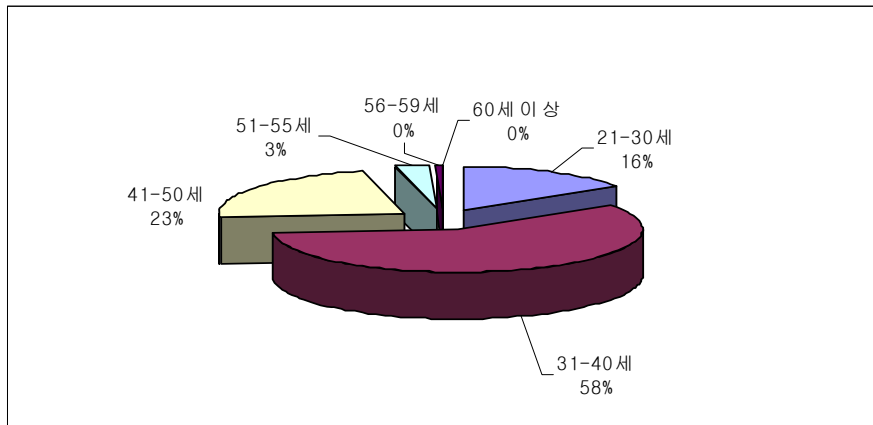
〈표12〉 제주도 여성 공무원 연령별 현황

(2005.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55세	56-59세	60세이상
제주도	1,132		177	653	262	35	4	1
전국	710,568	6	16,808	36,421	14,023	2,864	421	25

〈그림3〉 제주도 여성공무원 연령별 현황

(기준 : 2005.12.31 현재)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부서인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에 있어 여성공무원은 19.6%를 차지하고 하고 있다. 과거 여성 공무원을 해당 부서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으로 업무에 있어 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관행이 많이 사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부서의 여성 비율 낮은 실정이다.

〈표13〉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제주	전국
합계	전체	312	28,268
	여성	61	6,727
	비율	19.6	23.8
기획	전체	21	1,581
	여성	4	334
	비율	19.0	21.4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구분		제주	전국
예산	전체	22	1,256
	여성	5	253
	비율	22.7	20.1
인사	전체	25	1,655
	여성	6	359
	비율	24.0	21.7
감사	전체	28	1,559
	여성	2	193
	비율	7.1	12.4
실·국 주무과	전체	216	22,217
	여성	44	5,584
	비율	20.4	25.1

〈표14〉 여성공무원 배치 현황

(단위 : 명)

개요	2003	2004	2006	2006
주요보직 분야 전진 배치(비율)	4/56 (7.1)	2/56 (3.6)	4/33 (12.1)	14/95 (14.7)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추진	198/1,457 (13.6)	241/1,587 (15.2)	295/1,660 (17.8)	619/2,392 (25.9)

이를 다시 살펴보면 주요 부서 내 여성 공무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전체 공무원 6,816에서 여성 비율은 11.6%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 전체 공무원 28,268명 가운데 6,727명으로 12.2%가 증가하였다.

여성공무원의 증가는 인사 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가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2005년 12월 말 현재 인사 관련위원회 10개 위원회 74명 가운데 여성이 12명으로 전체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2.8%보다 높은 실정이며 승진 심사위원회(및 인사위원회)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있어 여성의 참여가 높으며 특히,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여성의 공직에 있어 참여를 위하여 5급(상당) 이상의 여성공무원이 꾸준히 증가하여야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정부 차원에서 여성공무원의 승진을 통한 비율을 올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내 전체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은 24.5%로 여성은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2005년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을 목표로

Ⅲ. 제주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 ◇

6.4%였으나 실질적으로 5.4%의 실적을 거두는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임용 확대 목표를 성실히 수행한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가장 성공적이다.

〈표15〉 2005년 여성 관리직 시도별 목표 대비 실적

(2005.12.31현재, 단위 : 명)

시·도별	목표율	실적			목표달성율	비고
		전체	여성	비율		
계	7.8%	17,496	1,036	5.9%	75.6%	
서울	11.7%	2,804	340	12.1%	103.4%	1
부산	7.6%	1,135	74	6.5%	85.5%	2
대구	8.6%	723	53	7.3%	84.9%	4
인천	8.1%	861	59	6.9%	85.2%	3
광주	9.7%	537	32	6.0%	61.9%	11
대전	7.0%	538	27	5.0%	71.4%	7
울산	5.4%	423	19	4.5%	83.3%	6
경기	8.9%	2,445	152	6.2%	69.7%	8
강원	5.6%	975	37	3.8%	67.9%	10
충남	4.7%	773	25	3.2%	68.1%	15
충북	5.3%	985	25	2.5%	47.2%	9
전북	7.2%	976	38	3.9%	54.2%	14
전남	5.9%	1,224	40	3.3%	55.9%	13
경북	6.2%	1,396	53	3.8%	61.3%	12
경남	6.7%	1,291	40	3.1%	46.3%	16
제주	6.4%	410	22	5.4%	84.4%	5

출처 : 행정자치부, 여성공무원 현황(2006. 6.30. 기준), 재구성

제주도는 전국에서 5번째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10%의 목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 가운데 여성 통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전체 통장의 24.6%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장의 경우 전체 이장의 1%에 해당하고 있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표16〉 제주도 여성 통·리장 현황

(2005.12.31. 단위 : 명, %)

	합계			통장			이장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제주도	644	118	18.3	427	116	24.6	172	2	1.0
전 국	95,728	37,138	38.8	56,399	31,802	56.4	39,329	5,336	3.0

출처 : 행정자치부. 여성공무원 현황(2006. 6.30. 기준). 재구성

마지막으로 여성의 위원회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제주도내 58개 위원회 615명 위원 가운데 여성위원 217명을 위촉하여 35.3%로 조사되었다. 시·군계 역시 177개 위원회 1,630명 가운데 여성위원 598명을 위촉하여 36.7%의 여성의원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이 일부 낮아지는 현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대상 위원회는 92개 위원회로 위촉률 30% 미만 위원회는 도정신문편집위원회, 도민화합추진위원회 등 46개로 조사되었다. 그와 반대로 위촉률 30%이상인 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38개 위원회이며 2006년 12월 말까지 구성될 위원회는 8개 위원회로 조사되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정부위원회 목표율은 38%로 현재 위촉위원이 없는 당연직위원회 9개 위원회를 제외하면 여성 위원의 위촉이 부진한 위원회³⁾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여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촉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한시적인 현상은 향후 여성 위원 참여율을 4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3) 참여가 부진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8개 위원회로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계약심의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문화재기술위원회,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치안행정위원회이다. 다음으로 여성위원이 위촉되었으나 10%미만인 위원회는 감괄관측조사위원회,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이다. 여성 위원 위촉이 10~20%미만인 위원회는 14개 위원회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관광진흥협의회, 제주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제주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민화합추진위원회,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축제육성위원회, 도지편찬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이다. 20~30%미만 위원회는 차치경찰인사위원회, 관광진흥기금운용위원회, 지역혁신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다.

〈표17〉 여성위원 위촉 및 활동 지원 현황

(단위 : 명, %)

개요	2003		2004		2006		2006
여성위원 참여목표를 40%달성	32.4%		34.8%		36%		22.6%
	도	31.3%	도	35.2%	도	35.3%	도 22.6%
	시·군	32.9%	시·군	34.7%	시·군	36.7%	
분야별 여성위원 균형참여 유도 및 적극적인 활동 지원(명)	위원회 워크숍 250명						

2. 경제부문

제주도내 여성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말 15세 이상 여성 인구 216천명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가 141천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취업 인구는 132천명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51.1%에 비하여 지역에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표18〉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 천명)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가사·육아	통학	기타*					
1999	392	253	243	9	140	54	45	41	64.5	3.6
2000	395	267	261	7	127	46	41	40	67.6	2.6
2001	397	270	264	7	127	43	41	43	68.0	2.6
2002	401	277	271	6	124	39	41	45	69.1	2.2
2003	406	286	281	5	120	41	36	43	70.5	1.9
2004	409	285	278	7	124	43	37	44	69.6	2.4

출처 : 제주도 통계연보 2005.

비고 : 2005년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자료 수집과정에서 데이터의 변동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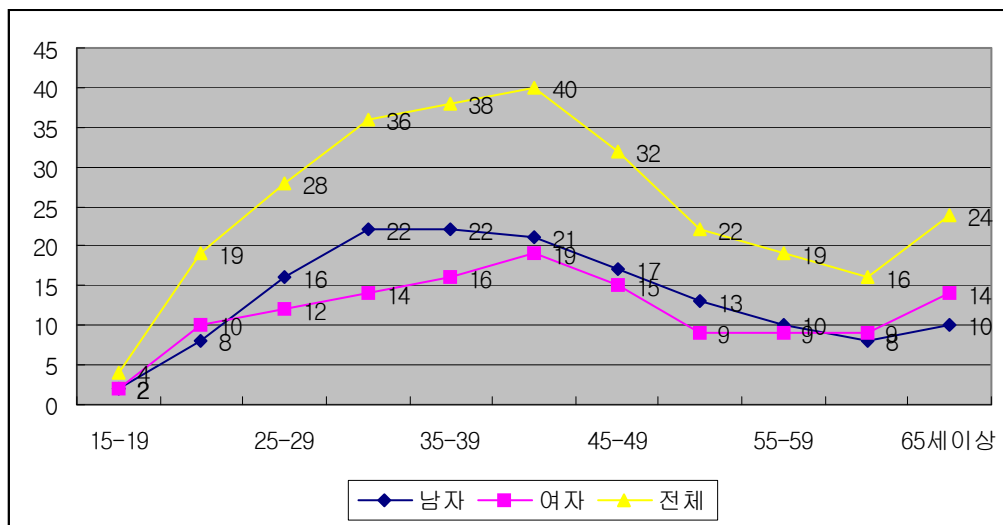
* 기타 : 연로, 연소, 불구 등

이를 다시 연령별로 취업자를 구분하면 전체 연령에 있어 가장 많이 취업을 하고 있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는 연령대는 30~39세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40~49세가 차지한다. 그러나 성별 취업자를 다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취업자 분포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 연령별 취업자



출처 : 제주도통계연보, 2005. 재구성

〈표19〉 연령별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구분	계	15-19세	20-29세	30-39세	41-49세	51-59세	60세 이상
여자	130	2	22	30	34	18	23
남자	148	2	24	44	38	23	18
합계	278	4	47	74	72	41	40

출처 : 제주도통계연보, 2005. 재구성

주 : 100단위에서 반올림하므로 연령별 합이 전체의 합과 안 맞을 수 있음.

앞서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논의가 지역 실정과 합치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짐으로 대졸이상의 학력보다 고졸 학력의 여성이 더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0〉 교육정도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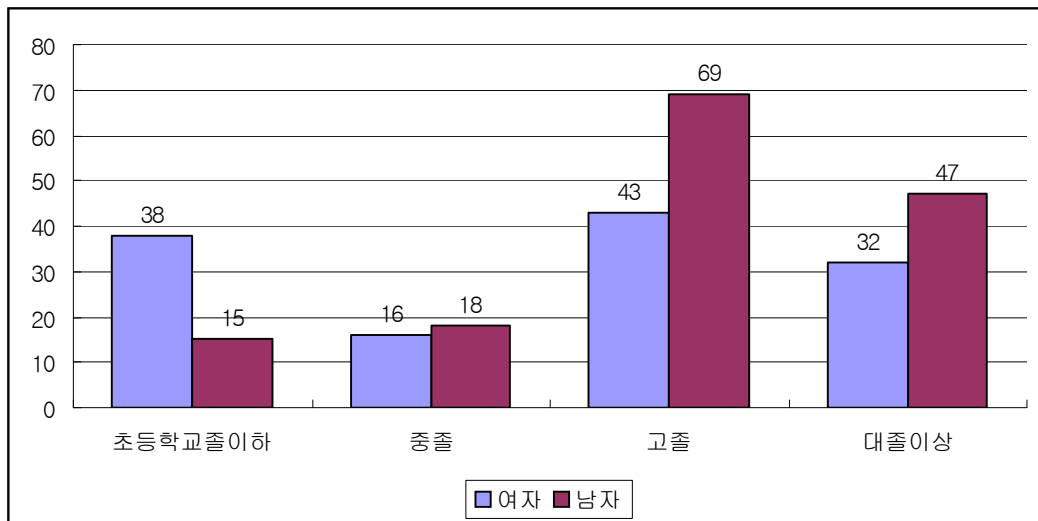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구분	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여자	130	38	16	43	32
남자	148	15	18	69	47
합계	278	53	35	112	79
비율	100	19	13	40	28

출처 : 제주도통계연보, 2005. 재구성

주 : 100단위에서 반올림하므로 연령별 합이 전체의 합과 안 맞을 수 있음.

〈그림5〉 교육정도별 남·여 취업자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 임금근로자가 여·남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임시직, 일용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영업자인 경우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급종사자는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노동의 주변화 또는 계토화(ghettoization)현상으로 비정규직화 현상이다. J.Jacobs는 이미 여성들이 주로 성전형적인 직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설명하면서 여성이 일생동안 다양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회전문 이론(revolving doors theory)'을 제시하였다. 여성은 비정규직화 되어 있으며 자신의 생애주기에 따라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성전형적인 직장과 성통합적인 직장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이전의 취업경력은 다음 단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결국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노동의 경로 단절(path-breaking)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표2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제주)

(단위 : 1,000명)

구분	총수	자영업주	무급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2002	계	271	86	29	156	58	62	36
	여	130	26	26	79	19	41	19
	남	141	60	4	77	39	21	17
2003	계	281	90	30	161	64	59	37
	여	129	29	26	74	20	35	19
	남	151	61	4	87	44	24	18
2004	계	278	93	26	158	65	54	40
	여	130	33	23	73	22	32	19
	남	148	60	3	86	43	22	21
2005	계	284	100	26	158	71	48	39
	여	135	35	23	76	26	29	21
	남	149	65	2	82	45	20	1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6

임금근로자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상위직종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특히 지난 □□여성비정규직의 차별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에 발표된 것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상위직종 11개 가운데 7개 직종이 여성우위직종으로 드러나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심각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표22〉 직종 중분류별 비정규직 우위직종과 여성우위직종 비교

비정규직 우위직종	여성 우위직종
33. 교육 준전문가	22.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51.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23. 교육전문가
52. 모텔, 판매원 및 선전원	42. 고객봉사사무직원
61.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	51.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62.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52. 모텔, 판매원 및 선전원
71. 추출 및 건축기능	61.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
73. 정밀 수공예인쇄관련	7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7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91. 행사 및 단순서비스직
91. 행사 및 단순서비스직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 노동자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 노동자	93.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93.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출처 : 국회여성위원회(2003). □□여성비정규직의 차별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국회여성위원회 정책연구. 재구성

지역여성의 교육 정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하여 학력이 낮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성장시기에 여성경제활동은 획기적인 증가에 있으며 전문직과 숙련직종에서 여성의 진출이 뚜렷하였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근로 조건이나 근로 여건 개선 등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오는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여성들이 자신의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 그럼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남성조합원에 비하여 여성조합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노동조합으로 택시, 자동차, 연합, 관광, 화학, 언론, 선원, 향운, 금속, 병원, 사무,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기타의 분야가 있다. 이 가운데 여성조합원이 가장 많은 조합은 민간서비스 부분으로 전체 조합원의 4%인 221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제주 지역 특성에 따라 관광 부문에 2%인 148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표23〉 제주도 노동조합 현황

(단위 : 개소, 명)

	계				단위노동조합				지부 또는 분회 등			
	조합수	조합원			조합수	조합원			조합수	조합원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1999	95	8,106	667	7,439	95	8,106	667	7,439	-	-	-	-
2000	74	6,689	639	6,050	74	6,689	639	6,050	-	-	-	-
2001	74	5,591	613	4,978	74	5,591	613	4,978	-	-	-	-
2002	77	4,951	588	4,363	77	4,951	588	4,363	-	-	-	-
2003	67	5,141	631	4,510	67	5,141	631	4,510	-	-	-	-
2004	56	5,293	604 (11.4%)	4,689 (88.6%)	53	5,250	604 (11.5%)	4,646 (88.5%)	3	43	-	43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6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해 부족한 경제활동 인구를 늘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낮은 이유는 돌봄의 확대가 크지 않은 것에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맞벌이 부부 및 홀벌이 가구의 남녀 노동시간에 있어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에 비하여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 내 성 역할의 인식의 전환이 보편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

〈표24〉 맞벌이 및 비맞벌이 가구의 남녀노동시간

(단위 : 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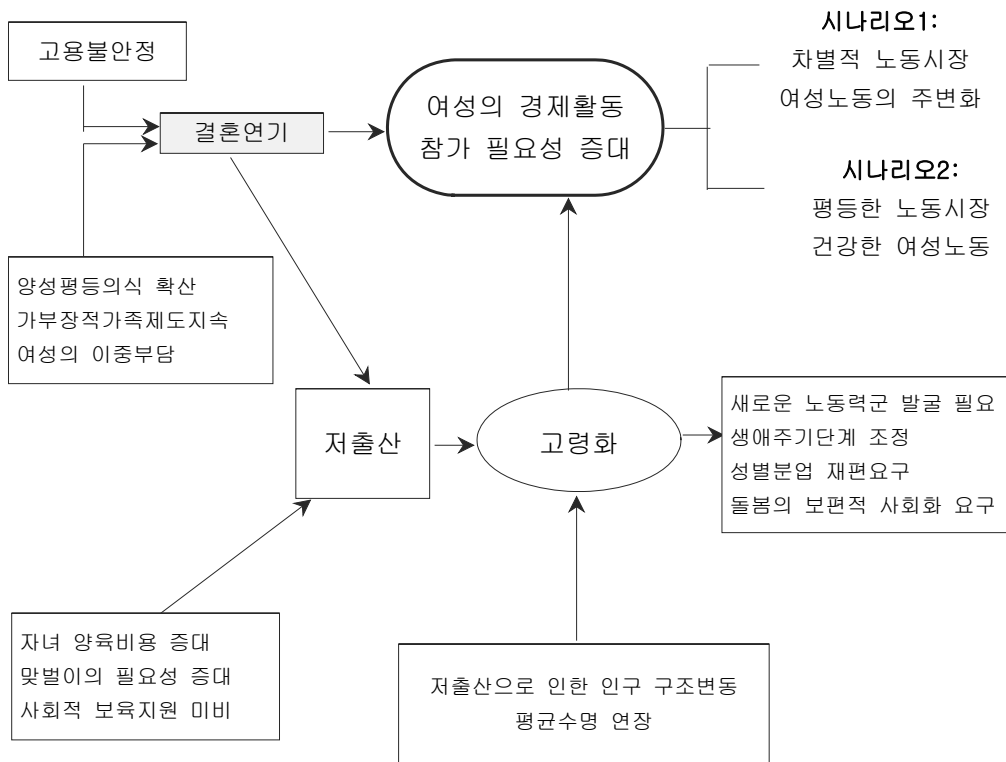
	맞벌이 가구		비맞벌이 가구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수입노동시간	5:14	6:34	0:05	6:26
가사노동시간	3:28	0:32	6:25	0:31
총 노동시간	8:42	7:06	6:30	6:57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5

비맞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비하여 총 노동시간의 차이는 30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의 노동시간보다 1시간 36분이나 더 많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여성은 결혼을 연기하고 그에 따른 저출산과 성차별적 노동현장은 재생산 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져 올 수밖에 없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전망은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6〉 여성 노동시장 분석틀



출처 : 젠더문제와 여성의 노동참여. 2005. 재인용

3. 자원봉사·단체 활동 부문

여성의 자원 활동에 대한 논의는 복지가 강화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여성 자원 활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동의 시작은 1947년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부녀봉사대'를 발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에 대한 관리가 시작된 것은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자원활동인력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1년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정무장관(제2실)에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여성자원활동에 대하여 잘 알려진바가 없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 될 수 있다.

최근 자원봉사 활동은 1996년 설립되기 시작하여 2004년까지 전국적으로 250개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추진성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비율이 높다. 연령에 따른 성별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여성의 연령을 통한 분석은 어려우나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25〉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제주	61,324	25,988 (42)	35,336 (58)	5,101	5,920	10,268	19,977	16,852	3,206
총계	2,083,704	900,214 (43)	1,183,490 (57)	461,728	280,234	291,274	495,536	345,960	208,972

출처 : 2005 자원봉사센터 현황. 행정자치부.

여성의 자원봉사가 남성에 비하여 높은 원인을 찾는다면 직업별 주부의 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의 비중은 다음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돌봄영역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자원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26〉 자원봉사자 직업별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직 업 별								
		주부	회사원	공무원	서비스	자영업	퇴직자	대학생	중고생	기 타
제주	61,324	13,390 (21.8)	8,546 (13.9)	431 (0.7)	3,045 (4.9)	9,577 (15.6)	321 (0.5)	1,597 (2.6)	3,766 (6.1)	20,651 (33.6)
전국	2,083,704	502,577	197,828	43,413	100,827	173,199	35,027	120,459	433,299	477,075

출처 : 2005 자원봉사센터 현황. 행정자치부.

〈표27〉 자원봉사활동실적

(단위:명, %)

구 분	계	사회복지	환경보호	교통질서	재해복구	의료시설	공공기관	구조구급	기 타
제주	191,056	105,530 (55.2)	33,304 (17.4)	22,032 (11.5)	9,353	8,028	2,679	968	9,162
총계	7,634,183	2,711,283	1,632,872	688,762	113,619	307,252	619,638	132,130	1,428,627

출처 : 2005 자원봉사센터 현황. 행정자치부.

* 1인이 사회복지, 재난, 교통 등 여러 분야 중복 활동시 각각의 참여인원으로 기재

여성중심 노동인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등이 자원활동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식사 배달, 목욕, 청소, 간병·간호 등의 비율이 전체 고정자원봉사의 59.6%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여성의 자원이 무임금노동으로 연결되어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나 여성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28〉 고정 자원봉사 수요자와 자원봉사자의 연계실적

(단위:명, %)

구 분	계	식 사 배 달	목 욕 청 소	말 벗 돼주기	간 병 간 호	이미용	무 료 급 식	재 가 봉 사	차 량 봉 사	기 타
제주	46,809	1,262 (2.6)	5,289 (11.3)	839 (1.7)	20,208 (43.1)	1,973 (4.2)	8,406 (17.9)	426 (0.9)	360 (0.7)	8,046 (17.1)
총계	1,856,492	206,747	200,713	237,528	162,980	99,755	379,938	199,639	84,346	284,846

출처 : 2005 자원봉사센터 현황. 행정자치부.

* 고정수요자 : 장애인, 독거노인, 노약자 등 봉사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

제주도내 도여협 12개 단체와 비회원 6개 단체, 38개 소그룹 여성모임 등 56개 단체 85,085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도여협 회원단체로 가장 많은 회원이 등록된 단체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이며, 8,7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제주여성외국어 자원봉사회는 17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비회원 단체 가운데 제주도새마을부녀회는 34,32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소그룹 가운데 종교단체인 교회 여성단체와 천주교 카톨릭 여성연합회가 가장 많은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표29〉 제주도 여성단체 현황

(2006. 1월말 현재 단위 : 명)

구분	단체명	회원수 (조직)
도 여협 (12) 22,652명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제주도지부	8,700
	대한간호협회제주도간호사회	1,190
	대한미용사회 제주도지회	1,197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제주도지회	3,200
	제주도 재향군인 여성회	312
	제주도 생활개선회	2,163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4,000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제주도협의회	200
	농가주부모임 제주도 연합회	900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여성협의회	300
	제주관광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모임	320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회	170
비회원단체 (6) 38,249명	제주도 새마을 부녀회	34,328
	제주 YWCA	2,182
	서귀포 YWCA	1,000
	전문직 여성클럽 한국연맹제주지부	111
	제주여민회	500
	제주도여약사회	128
소그룹여성모임 (38) 24,184명	대한영양사회 제주지부	130
	한국꽃꽂이협회 늘봄회	300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제주도지부	150
	한국전통꽃예술연구회 제주지부	100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늘푸름봉사회	20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좋은 가정만들기 모임	20

Ⅲ. 제주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 ◇

구분	단체명	회원수 (조직)
소그룹여성모임 (38) 24,184명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교육강사회	15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제주지부	200
	한국복지재단제주지부 주부후원회	20
	대한민국 전물군경미망인회 제주지부	1,020
	새세대육영회 제주도지회	300
	제주예절원(사)	105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읽는 어른모임제주협의회	114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제주지회	70
	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69
	교통안전어머니회	
	참정치를 여는 여성연대	70
	제주도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560
	제주불교여성합창단	55
	태고보현봉사단	105
	제주송악라이온즈	40
	한란라이온즈	42
	만덕라이온즈	32
	월계수라이온즈	30
	이어도라이온즈	40
	스완스라이온즈	38
	남원큰영라이온즈	25
	제주도교회여성연합회	11,000
	천주교제주교구카톨릭여성연합회	9,000
	제주불교여성단체 연합회	50
	제주불교사회봉사회장	61
	제주원불교여성회	50
	대한조산협회 제주도조산사회	50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제주도연합	130
	탐모라 로타리클럽	75
	한란 로타리클럽	38
	한미모 로타리클럽	40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100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여성단체는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자체사업과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행사·이벤트성 사업과 자원봉사·문화·전문교육·환경 개선 등 대표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V. 보육 실태

1. 여성사회 참여를 위한 보육 실태

우리나라에 있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보육과 육아지원 정책은 취업여성 가운데 특히 저소득 여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전개되어왔다. 정책 초기 취업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나 최근 논의는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자녀보육·교육비 세제 지원이 있으나 육아지원제도로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가족을 위한 급여제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양육비 지원, 장애아동수당 등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교육비 지원을 제외하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현재 취업과 관련되어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점검을 통해 현재 보육 실태와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여성의 현실

2006년 발표된 여성의 삶은 변화된 여성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선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를 통해 사회참여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혼의 경우는 경제 활동 참가율에 있어 차이가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유배우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별·이혼 등의 가족 내 변화를 대처 하기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함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함으로 '빈곤의 여성화'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표30〉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구분	여성						남성					
	미혼		유배우		사별·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이혼	
	참가율	실업률	참가율	실업률	참가율	실업률	참가율	실업률	참가율	실업률	참가율	실업률
1980	50.8	9.3	41.5	0.9	34.7	1.7	52.4	13.1	89.7	4.1	49.2	6.9
1985	44.7	7.1	42.5	0.6	35.0	1.2	43.5	12.4	88.0	3.1	52.0	4.5
1990	46.5	5.2	49.2	0.6	39.3	0.6	44.0	8.0	89.6	1.6	57.3	3.8
1995	50.4	4.6	49.5	0.6	40.0	0.8	50.0	6.0	90.3	1.3	63.7	2.4
2000	48.1	7.4	51.2	2.4	39.5	2.9	51.5	10.5	86.4	3.1	63.2	9.1
2005	53.6	7.1	51.4	1.9	40.2	2.8	53.6	9.3	85.2	2.3	64.3	6.6

출처 :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2006.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력 단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결혼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결혼에 대한 찬성이 여성과 남성 모두 평균 73.5%로 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혼적령기인 20-29세 여성은 남성의 결혼찬성에 비하여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졸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남성의 찬성에 대한 의견과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성에게 전적으로 부과되던 돌봄과 주변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31〉 결혼에 대한 견해(1998-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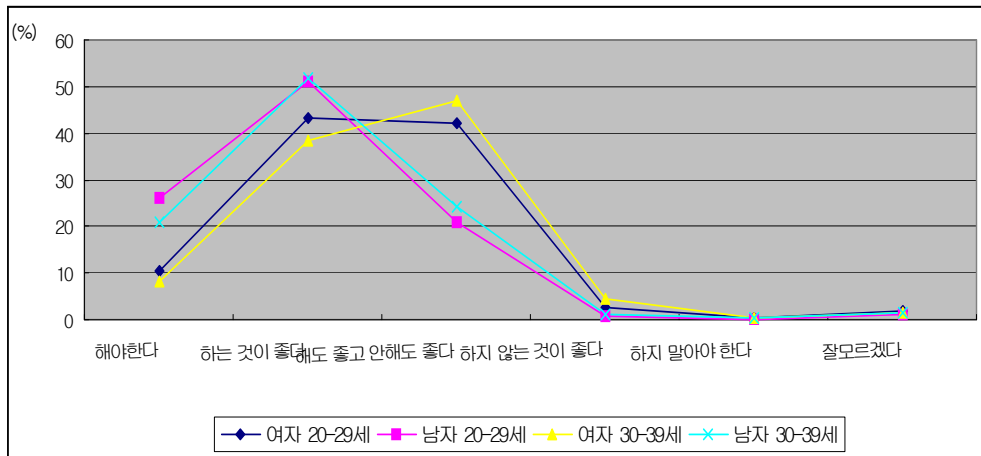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찬성	해도좋고 안해도 좋다		반대	하지않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것이 좋다		하지않는 것이 좋다	하지말아야한다		
15세이상 인구 (1999)	100	73.5	33.6	39.9	23.8	1.3	1.1	0.2	1.4
15세이상 인구 (2002)	100	69.1	25.6	43.5	27.2	2.0	1.7	0.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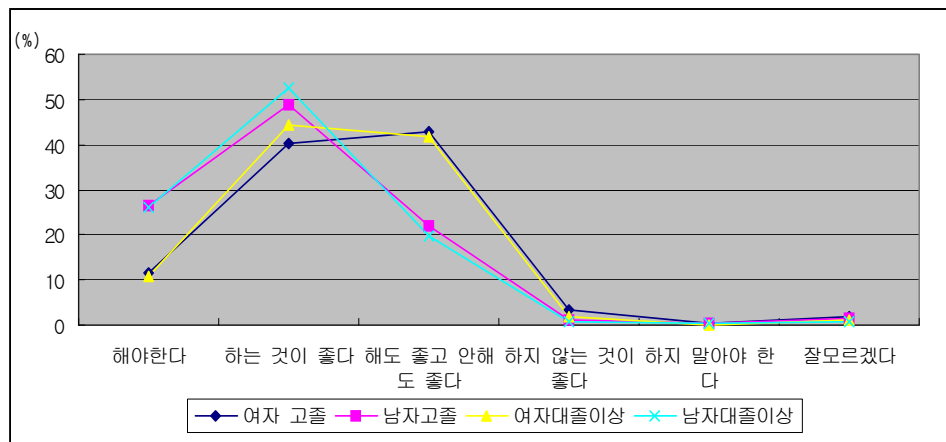
구분	계	찬성			해도좋고 안해도 좋다	반대			잘 모르겠다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것이 좋다			하지않는 것이좋다	하지말아 야한다	
여성 (1999)	100	67.9	30.5	37.4	28.9	1.6	1.4	0.2	1.5
여성 (2002)	100	61.3	21.9	39.4	34.1	2.8	2.6	0.3	1.8
남성 (1999)	100	79.5	36.9	42.6	18.4	0.8	0.7	0.1	1.4
남성 (2002)	100	77.3	29.5	47.8	19.9	1.1	0.9	0.2	1.7

출처 :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2006.

〈그림7〉 연령별 결혼에 대한 견해(2002년)



〈그림8〉 학력별 결혼에 대한 견해(2002년)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성별 근속년수별 근로자의 구성비에 있어서 비교적 3~4년까지 근속년수는 여성과 남성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5년 이상의 경우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있어 경력단절을 의미 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표32〉 성별 근속년수별 근로자 구성비

(단위 : 천명, %)

구분	총수	1년 미만		1-2년		3-4년		5-9년		10년 이상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980	2,729	1,068	1,661	29.0	34.1	25.7	40.4	44.4	37.2		
1990	4,677	1,526	3,151	21.0	24.7	19.1	30.1	38.2	26.2		
2000	5,735	1,765	3,970	22.2	28.5	19.4	20.8	24.4	19.2		
2004	6,451	1,993	4,457	19.4	24.1	17.4	25.7	31.0	23.3		
구분	3-4년	5-9년		10년 이상		11-15년		16년 이상			
1980	15.0	15.0	14.9	11.5	5.9	15.0	4.5	0.5	7.1		
1990	18.5	20.8	17.3	18.3	13.1	20.9	12.1	3.2	16.4		
2000	16.8	18.9	15.9	21.0	18.5	22.1	19.2	9.7	23.4		
2004	15.9	18.0	15.0	18.4	15.8	19.6	20.5	11.1	24.7		

출처 :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2006. 재구성.

근속연수의 차이는 여성의 취업에 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즉,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매우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정 일에 관계없이 여성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표33〉 여성의 취업에 관한 태도

(단위:%)

구분	계	태도							잘 모르겠다
		가정에만 전념	직업을 가치는 것이 좋다	결혼전까지만	첫자녀 출산전까지	자녀 성장후	결혼전과 자녀성장후	가정일에 관계없이	
1998	여성	8.5	89.0	10.3	6.7	14.0	27.6	30.4	2.6
	남성	11.6	84.8	13.1	8.4	15.0	25.2	23.1	3.7
2002	여성	6.0	89.8	4.4	5.5	13.4	26.2	40.2	4.2
	남성	10.3	83.3	6.1	8.1	14.3	24.6	32.4	6.3

출처 :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2006.

여성의 취업중단 경험에서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자녀양육과 가사일 전념을 위하여 취업중단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자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직장의 불이익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중단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취학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과 가사일 전념의 비율이 높으며 오히려 건강상의 이유로 여성의 취업이 중단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출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우 건강권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설령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양육과 가사, 직장이라는 삼중고가 여성들에게 많은 제약을 주게 되므로 자연 건강상의 이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34〉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중단 경험여부 및 이유

(단위 : %)

구분	계	가정에만 전념	취업 중단 이유							
			자녀 양육	가사일 전념	건강상 이유	남편 및 식구 반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출산에 따른 직장불이익	기타	
전체	100	38.4	64.9	8.4	5.2	1.3	3.2	12.6	4.3	
자녀 취학 여부	미취학	100	41.4	66.1	6.4	3.5	1.1	2.9	16.6	3.4
	취학	100	34.5	63.3	11.4	7.7	1.5	3.7	6.6	5.7

출처 :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이러한 여성들이 취업을 위한 장애요건을 조사하는데 있어 육아부분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남성 역시 육아부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성 취업에 대한 가족 지원을 기대하는 데 있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표35〉 여성의 취업 장애요인

(단위:%)

구분	계	취업 장애요인									
		사회적편견 차별적관행 및 제도	여성의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일에 대한 여성자신의 능력부족	구인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육아 부담	가사 부담	기타	잘 모르겠다	
1998	여성	100	27.6	8.1	13.0	4.0		31.4	10.8	0.1	4.9
	남성	100	28.8	11.9	11.9	4.6		27.1	10.4	0.1	5.2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구분	계	사회적편견 차별적관행 및 제도	여성의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일에 대한 여성자신의 능력부족	구인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육아 부담	가사 부담	기타	잘 모르겠다	
											2002
	남성	100	24.0	8.1	11.5	2.6	1.6	36.3	8.6	0.2	7.1

출처 :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재구성

2. 보육과 육아지원 제도

육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여성노동부분으로 입법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기존의 여성노동은 미혼, 저연령의 근로자에서 1980년대 인권의식 향상, 교육기회 확대, 출산을 감소, 가구원 수 감소, 가전제품의 발달 등으로 가사부담의 경감 등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여성보다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용에 있어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1987년 법률 제3989호인 「남녀고용평등법」, 1991년 법률 제7153호인 「영유아보육법」이 탄생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여성 보호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를 명시하였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 보육지원 등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성에게만 인정되는 육아휴직이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을 고착시키고 고용에 있어 성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 한 것은 육아에 대한 남녀 공동참여와 책임을 인정한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또한 산전후 휴가 기간이 90일로 확대되고 추가비용을 고용보험으로 확대한 것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등 모성정책의 커다란 변화이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보편성 확대와 아동 보육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밝힘으로 건강한 사회성원을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

원하여 가정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다.

〈표36〉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검토 내용

목표	영역구분	검토내용	비고
모성보호 강화	산전후 휴가	- 산전후 휴가 대상, 적용범위 - 휴가기간 중 임금부담의 주체	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제72조
	육아휴직	- 육아휴직 대상, 기간, 형태 - 휴직기간 중 소득보장 - 기업의 부담 - 제도의 실효성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직장에서의 보육지원	직장보육	- 적정 보육의 비중 - 의무 설치 기준, 기업의 부담 - 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시설설치 운영-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보육기회 공급	- 기관보육 이용 수준 - 지역 배치 - 설치 주체 - 시설규모, 보육의 다양성	보육-영유아보육법
보육 이용가능성 제고 및 부모부담완화	보육비용	- 보육 재정 규모 - 보육비용 지원 방식 - 재정의 지역차이 - 표준보육비용, 보육료 상한제 - 보육료 지원, 세제지원	비용-영유아보육법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	보육인력	- 자격 및 전문성, 보수교육 - 처우 및 신분 - 배치기준	보육-영유아보육법
	보육내용	- 보육과정	내용-영유아보육법
	지도감독	- 지도·감독	지도·감독-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의 효율성제고	행정 및 지원	-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 보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육정보센터-영유아보육법

출처 : 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방안 연구, 2004. 재구성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가운데 참여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보육정책이 있다. 보육 지원을 통해 여성 취업을 창출하는 것을 바탕으로 결국 여성정책과 보육정책의 밀접한 연계를 강조하면서 등장하였다.

보육계획은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령” 전면 개정을 통해 보육계획의 수립 의무화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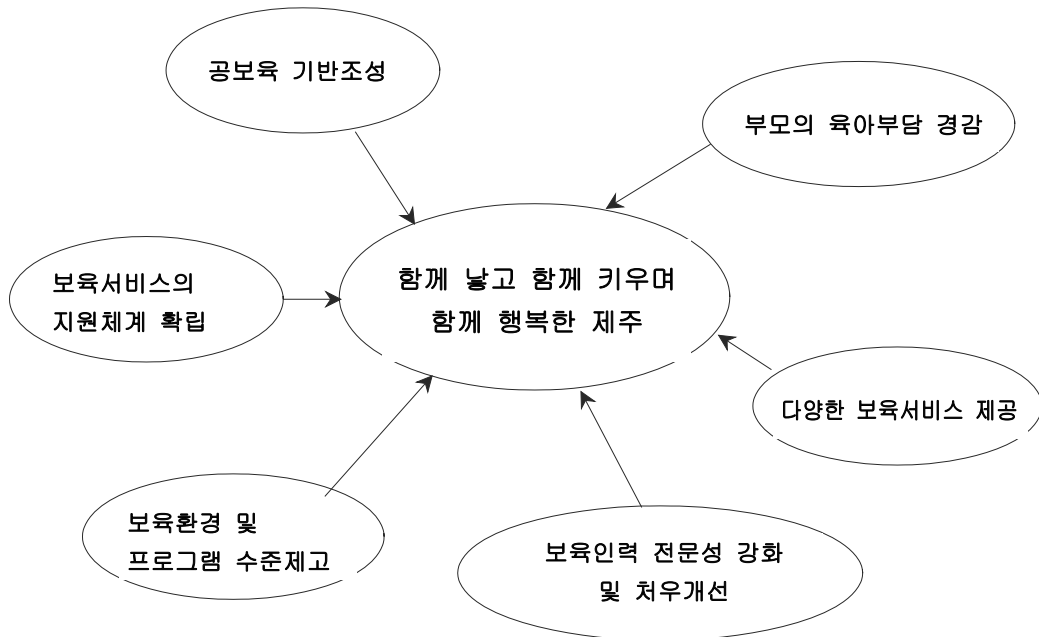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결국 사회적으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내 자녀양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여성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강하게 대두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 경력단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영유아는 물론 아동 중심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것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보육에 대한 연령별, 거주 지역별, 부모 취업 여부 등 다양한 욕구들의 표출을 바탕으로 공보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육에 대한 비전은 함께 낳고 함께 키우며 함께 행복한 제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지자체의 보육책무성 제고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발전목표로 6개 25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그림9〉 제주특별자치도 보육 발전목표



제주도내 보육시설의 실태는 2006년 6월 현재 416개소로 공립 12개소, 법인 76개소, 법인 외 40개소, 직장보육시설 5개소, 개인 시설 221개소, 놀이방 6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37〉 보육시설 유형별 현황(2006.6.현재)

(단위:개소)

구 분	계	공 립	법 인	법인의외	직 장	개 인	놀이방
계	416	12	76	40	5	221	62
제 주 시	249	8	28	10	2	157	44
서귀포시	72	-	18	7	2	37	8
북제주군	53	1	16	12	-	17	7
남제주군	42	3	14	11	1	10	3

보육에 있어 현재 시설 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취업부모에게 어떠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취업모의 취업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가가 최대의 관건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06-2010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에서 취업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직장보육 활성화, 보육시설 입소순위 고려시, 보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취업부모에게 우선 입소권⁴⁾을 부여 하는 방안,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지원 차등화, 육아비용에 대한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개편 방안 검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노동부와 공동으로 연 2회 정기실태 조사 및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직장보육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⁵⁾를 통해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003년 11월 개소한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는 이러한 직장보육실태를 점검하고 홍보하고 설치·운영하는데 있어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4) 보육시설의 입소순위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②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부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상위), ④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복지시설), ⑥ 맞벌이, 한부모·조부모 가정(맞벌이, 결손), ⑦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기타 저소득), ⑧입양된 영유아(입양아), ⑨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자녀)로 순위에 대한 규정이 있다.
- 5)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취득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와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72조), 보육시설의 교재용 구입 기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55조제1항제23호)가 있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그림10〉 직장보육서비스 지원제도

◎ 재정지원

♣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지원주체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고
노동부	설치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2억원	-소요금액의 60%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장애아 시설 80%)
			유구비품비	5천만원	
	용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등	5억원	-상환: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대기업2%, 우선지원기업1% * 토지매입비는 용자대상에서 제외	
운영	무상지원	무상지원	1인당 월 80만원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유 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 아동수가 4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민간사업업장(고용보험적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 일반예산 지원(영유아보육법 제36조)

지원주체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고
여성 가족부	운영	무상지원	시간연장 보육지원	교사 1인당 1백만원	-시·군·구청장이 지정 하는 시설에 한함
			영아반운영비 지원	0세반:249천원/1인,3명한 1세반:104천원/1인,5명한 2세반:69천원/1인,7명한	-공공기관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과 고용 보험기금에서 운영비 를 지원받는 직장보육 시설은 제외
			교재교구비 지원	현원에 따라 500~1,200천원 차등지원	

출처: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2006. 여성가족부

또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양성평등적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현황 및 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혜택을 부여 하는 정책 역시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산전후 휴가에 및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 하여 기존 30일을 90일로 확대하는 것과 휴직기간에 있어 소득보전과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추진은 물론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정책과 함께 육아휴직 이용을 제고를 위한 신청 요건의 완화 추진을 통해 기존 1년 미만의 영아를 생후 3년 미만의 영아

로 함은 물론 대체 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점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마련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이다.

3. 모성보호 강화

모성보호를 위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있다.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2조에 의하여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산전후 기간 동안 휴가를 주는 제도이다.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로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9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급여는 90일 가운데 60일을 사업주가 30일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기준 월 135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2006년부터 중소기업규모의 우선지원 기업은 9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30일분을 지급하고 있다. 산전후휴가 신청은 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한 서류로 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사업주 작성), 산전후휴가 신청서 1부(근로자 작성), 산전후 휴가 시작 전 임금대장과 산전후 휴가 기간 중 임금대장 각 1부, 유산 또는 사산 관련 증명서가 있다. 이를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육아휴직급여⁶⁾는 만1세 이하 영아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아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 된 자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육아휴직 신청서(근로자 작성)를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매달 40만원⁷⁾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06년 11월 현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은 근로자는 44,688명으로 2003년 32,133

6) 육아휴직급여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3세미만으로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7) 2007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이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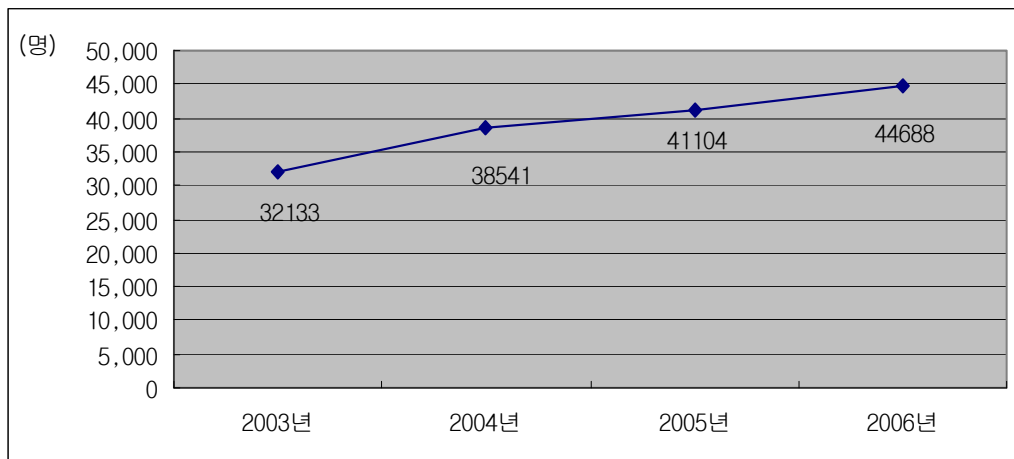
명에 비하여 12,555명이 증가하였지만 지원금액은 2.5배나 증가한 81,564백만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역시 지원자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지원액 역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38〉 산전후휴가급여 실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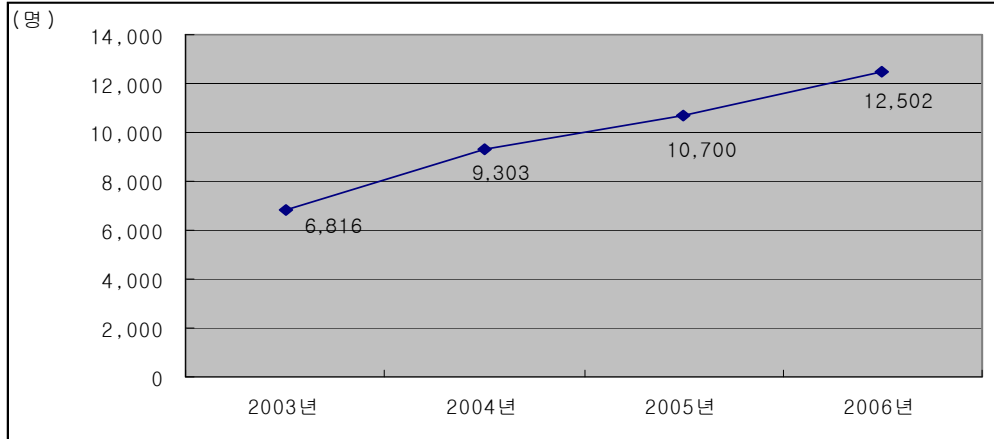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산전후휴가급여	
	인원	지급액
2003년	32,133	33,522
2004년	38,541	41,610
2005년	41,104	46,041
2006.11월	44,688	81,564

〈그림11〉 산전후휴가 지급 인원



〈그림12〉 육아휴직 지급 인원



여기서 육아 휴직급여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신규 수급과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9〉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육아휴직급여								
	총계			여성			남성		
	신규수급	인원	금액	신규수급	인원	금액	신규수급	인원	금액
2002년	3,763	-	3,087	3,685	-	3,033	78	-	54
2003년	6,816	-	10,576	6,712	-	10,443	104	-	133
2004년	9,303	-	20,803	9,122	-	20,478	181	-	326
2005년	10,704	39,310	28,240	10,496	38,568	27,753	208	742	487
2006.1-4월	3,810	14,614	9,968	3,740	14,400	9,809	70	215	158

출처 :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특히, 공무원의 경우 연도별 육아휴직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에 비하여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표40〉 공무원 연도별 육아휴직 이용현황('99-'05)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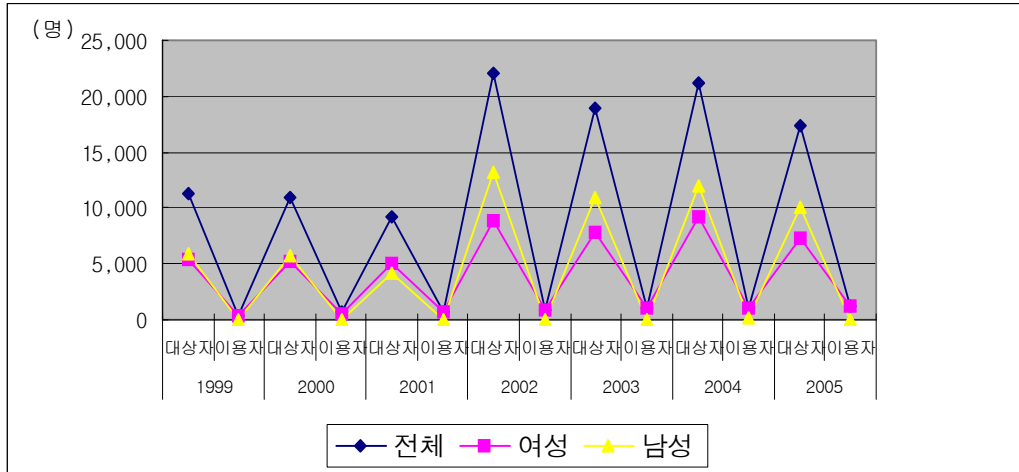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상자	이용자	대상자	이용자	대상자	이용자	대상자	이용자	대상자	이용자	대상자	이용자	대상자	이용자
전체	11,299	373	10,952	617	9,243	736	21,965	891	18,858	1,107	21,130	1,086	17,287	1,192
여성	5,411	356	5,292	590	5,029	707	8,813	854	7,881	1,040	9,208	989	7,252	1,142
남성	5,888	17	5,660	27	4,214	29	13,152	37	10,977	67	11,922	97	10,035	50
이용률	3.3%		5.6%		8.0%		4.1%		5.9%		5.1%		6.9%	

출처 : 행정자치부 여성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2006

주 1) 대상자는 1세 미만('01년 이전) 또는 3세미만('02년 이후) 자녀를 둔 공무원수

2) 2000년까지 지방교육행정직 포함

〈그림13〉 연도별 육아휴직 이용 현황('99-'05)



모성보호 강화를 위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시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무엇보다 돌봄의 사회화가 아직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실정으로 신청율이 낮은 것이 아닌 처음부터 출산으로 진입되는 여성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통해 전반적인 감소를 앞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표41〉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 %, 평균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¹⁾ (여성천명당)							합계출산율 ²⁾ (가임여성1명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19.3	192.8	320.1	205.4	105.8	46.0	13.1	4.53
1980	12.9	141.4	244.1	106.6	30.6	8.5	2.0	2.83
1990	4.2	83.2	169.4	50.5	9.6	1.5	0.2	1.59
1995	3.6	62.9	177.1	69.6	15.2	2.3	0.2	1.65
2000	2.5	39.0	150.6	84.2	17.4	2.6	0.2	1.47
2001	2.2	31.6	130.1	78.3	17.2	2.5	0.2	1.30
2002	2.6	26.6	111.3	75.0	16.7	2.4	0.2	1.17
2003	2.5	23.7	112.3	79.9	17.3	2.5	0.2	1.19
2004	2.3	20.4	104.6	84.2	18.6	2.5	0.2	1.16
2005 ^p	-	17.9	92.3	82.3	18.9	-	-	1.08

출처 :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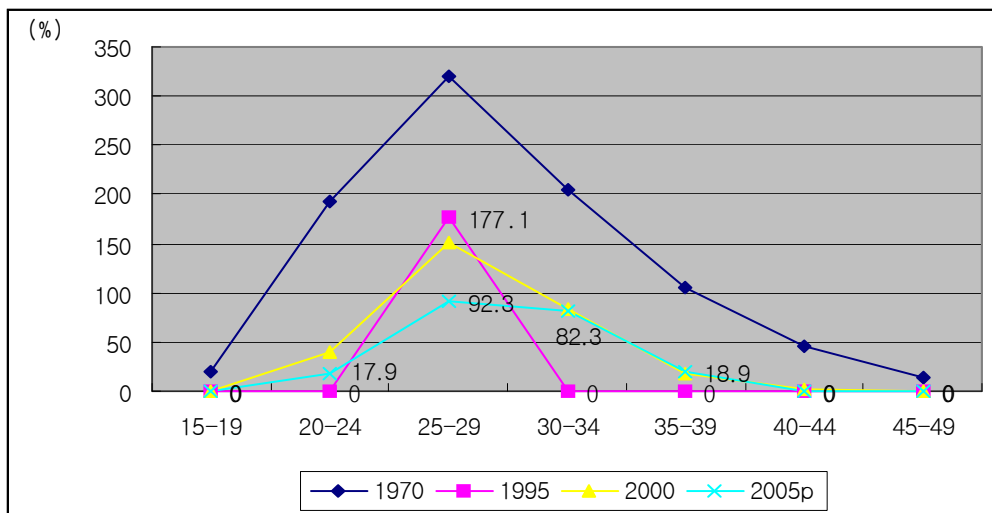
주 : 1) 연령별 출산율(%)=(모의연령별 출생아수/당해연령별 여자인구)× 1,000

2) 합계 출산율=(연령별 출산율의 합/1,000)× 5

p : 잠정치

〈표41〉를 살펴보면 〈그림14〉를 통해 1995년에 비하여 전반적인 출산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의 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14〉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4. 아동양육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함께 다양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일부 논의가 되었다. 특히, 아동의 학습권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 등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는 바로 가정 형성기, 확장기, 성장기 등과 맞물리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보육 시설의 다양화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시간연장형 보육의 활성화이다. 보육정책의 변화로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지원을 매년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의 지원요건은 5명 이상의 아동이 19시 30분 이후 보육하고 21시까지 아동 2명 이상이 보육될 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기준의 완화를 통해 아동들에 대한 안전권 및 학습권을 보장함에 따라 여성이 사회참여에 대한 불안이나 어려움을 없도록 지원해주는 체계 마련이 여전히 시급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토요일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 아동의 감소로 일부 탄력적인 운영이 일어나고 있으나 보육아동의 감소와 관계없이 보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9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정의 다양한 일들로 인해 자연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나 시간연장형, 야간보육 등의 형태의 돌봄에 대한 욕구들이 증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적인 접근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역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소외지역과 과밀지역의 격차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과 지역의 균형발전까지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운영주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교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분산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각 유사한 프로그램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의 강화가 매우 절실히 요

구되고 있다. 또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의 확대 및 방과후 전담시설의 허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에 대한 청소년 위원회의 검토와 지역아동센터를 기존의 800개소에서 2000개로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의 조율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간의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학습 및 인성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42〉 방과후 활동 운영현황

구분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교실	방과후 학교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교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
대상아동	지역사회 아동 18세 미만	초(4~6학년) 중(1~2년) 만9~13세	저소득 중고생 만12~17세	초등학생 1~3학년 만6~8세	초·중·고생 만6~17세	초등학생 1~6학년 만6~12세
수용규모	30명/개소	60명/개소	25~100석	18명/교실	30명/교실	15명/개소
수용현황	23,000명	2,350명	27,333명	15,538명	85,000명	20,159명
운영시간	8시간/일 11~19시 토요일 운영	5시간/일 15~22시 토요일운영	5시간/일 15~22시 토요일운영	5시간/일 15~22시 토요일운영	5시간/일 15~22시 토요일운영	5시간/일 15~22시 토요일운영
주요기능	학습지도 및 보호,급식 등 종합서비스 제공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급식 등 종합서비스	학습공간 제공 (독서실)	보육·교육 프로그램 제공	특기적성 교육·보충 학습 방과후 교실 통합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현황	902개소	46개소	459개소	681개소 (875교실)	48개교	1,459개소
이용자 부담	무료	월 160~178천원 저소득층무료	일 300~500원	월5~7만원 저소득층무료	파악중	0~30만원 저소득층무 료
지원현황	73억원 (일반회계) 월200만원 (800개소) 서울20, 지방50%	21억원 (일반회계) 월560만원 (46개소) 전액국고 (예비비)	16억원 (균특) 월83만원 (323개소) 서울0, 지방50%	84억원 (지방교육재 정) 지방비 일부 포함 년1,200만원 (681개교)	10억 (특별교부금) 년2,000만원 (48개교)	4억원 (일반회계) 교사인건비 지원 (100개소)

도내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를 다시 신고여부로 구분하면 26개소가 신고 되어 있으며, 8개소는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표43〉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신고시설			미신고 시설	비고
		소계	지원	미지원		
계	34	26	17	9	8	-
제주시	20	12	8	4	8	-
서귀포시	14	14	9	5	-	-

출처 : 제주도, 여성정책과

이들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408,000천원으로 개소당 월 2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아동센터 일일 이용인원은 860명으로 미취학 아동 103명, 초등학생 658명, 중학생 88명, 고등학생 1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을 위하여 학습지도와 간식제공,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능공부방은 현재 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수능공부방은 총 사업비 108,000천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총사업비의 27%에 해당됨에 따라 각 공부방 운영 지원은 1백만원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44〉 수능공부방 운영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이용아동			
		소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9	221	57	94	70
제주시	4	137	18	71	48
서귀포시	5	84	39	23	22

출처 : 제주도, 여성정책과

그 밖에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부터 부모님 귀가시간까지 “나 홀로 방치되는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새롭게 운영되는 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대상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등 2학년까지 각 개소당 40명 내외로 인원에 제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PM(Product manager)1명과 SM(Schedule manager)1명을 두어 지역아동센터와 수능공부방과는 다른 체계적인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습의 과정을 구분하고 그 밖에 상담, 생활 일정관리 등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의 부족에서 오는 아이들의 갈등과 소통 부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 자원 활동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표4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단위:개소)

구분	내용	강사진 구성
기본과정	숙제지도, 보충심화학습(주요과목) 자기주도 학습 등	대학생, 대학원생, 주부, 퇴직교사 및 지역사회 자원 인력 활용
전문선택과정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외국어 등 특기·적성 교육	분야별 전문기능수행가능자 지역사회 전문인력 활용
특별지원과정	부모간담회, 가족캠프, 부모교육 등	
생활지원	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 관리 등	
운영시간	평일 : 오후 3시~저녁 10시 토요일(등교일/휴무일): 정오~저녁 7시/아침 9시~오후 4시	

출처 : 제주도, 여성정책과

지역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개소당 평균 185백만원이 지원됨으로 중앙기준 150백만원에 비하여 지원 폭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용자 유형은 주로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6〉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가 유형별 현황

(단위:명)

구분	계	저소득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아동급식 대상
학생수	208	54	101	45	3	5
비율(%)	100	26	48.6	21.6	1.4	2.4

출처 : 제주도, 여성정책과

도내 운영주체는 5개소로 서귀포청소년문화집의 위탁운영을 제외하면 4개소는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청소년수련관은 초등학생 40명, 서귀포청소년수련관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20명, 대정청소년수련관 초등학생 23명 중학생 20명,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20명,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 보육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적 인구 구성에 따른 안배 등 지역적·연령별·소득별 다각화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 정책 제언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보다 양성평등한 사회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질 높은 정책의 개발이 중요하다.

사회는 매우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변화는 더욱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과 달리 의식과 인식은 지난(至難)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전 영역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 양극화로 인해 보육·노인·돌봄 등 여성에게 전적으로 부과되었던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일부는 최근 저출산이라는 사회현상을 “여성의 출산과업”으로 정의내리기도 하며, 돌봄을 공공에게 맡기는 여성을 “나쁜 며느리”, “나쁜 엄마” 등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여성으로 낙인 찍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트로피남편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는 것을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노동력이라는 사회적 접근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여성의 사회참여는 돌봄의 공공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일본에서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과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5개국에서 각각 1000명의 남녀를 선정 양성평등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취업에 있어 양성평등하지 않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사례가 있다. 즉, ‘취학 전 아동의 육아를 누가 담당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일본인 설문자 중 66.8%가 ‘아내가 맡아야 한다’(8.9%), ‘아내가 주로 맡고 남편이 옆에서 도와줘야 한

8) 트로피남편(trophy husband)은 성공한 아내 대신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남편을 말한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성공한 아내를 대신해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남편으로 전업주부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트로피 와이프(trophy wife)에서 유래한 말로, 1980년대 말 미국의 격주간 종합 경제지인 <포춘 Fortune>이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포춘>은 초호화 주택에 거주하는 성공한 중장년 남성들이 조강지처와 이혼한 뒤 몇 차례의 결혼 끝에 마치 부상(副賞)으로 받는 트로피처럼 얻은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트로피 와이프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2000년을 전후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성공하는 여성들이 많아지자, 이러한 아내를 위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남편들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남편도 생겨났는데, 이러한 남편을 트로피 와이프와 반대된다는 뜻으로 트로피 남편이라고 한 것이다. 트로피 남편의 일상은 아침이면 아내의 기상 시간에 맞추어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출근 준비를 도우며, 저녁에는 퇴근 시간에 맞추어 저녁을 준비한다. 집안 청소와 빨래는 물론, 아이의 유치원 등학교를 챙기거나 주말계획을 짜는 등 전업주부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57.9%), '남편과 아내의 공동책임'(31.2%)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반면 유럽의 고출산국인 스웨덴의 경우 '아내 쪽에 책임이 있다'는 6.8%에 불과하고 92.4%가 '공동부담'으로 조사되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엔 '아내 쪽에 책임을 떠맡긴다'가 각각 36.0%와 45.1%로 스웨덴보다는 높았지만 '공동책임'이라는 의견은 60.4%, 53.3%로 한국과 일본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두 번째 항목으로 '남편은 밖에서 활동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는 성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일본인은 57.1%가 '찬성'(11.1%) 또는 '대체로 찬성'(46.0%)이라고 답해 긍정적 대답이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긍정적 답'(48.5%)과 '부정적 답'(49.1%)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반대 의견'이 54.6%와 71.4%로 나왔다. 스웨덴은 '성 역할 구분'에 찬성하는 의견은 8.6%에 불과한 반면 반대 의견이 90.7%로 성 구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회적으로 사라졌음을 보여줬다. 또한 '3세 미만 아기는 엄마가 집에서 키워야 한다'는 '3세아 신화(神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긍정적 답'이 85.5%로 가장 높았다. 일본도 67.8%가 그렇게 답해 육아문제에 대해 가정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에 반해 사회 보육시설이 잘 정비돼 있는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각각 48.8%와 67.5%로 나왔다. '자기 나라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79.8%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우리나라가 자국민에게 가장 육아 기반시설이 취약한 나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일본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7.6%와 50.3%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스웨덴은 압도적인 다수(97.7%)가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나라라고 답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 활용하는 제도나 시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31.5%, 일본인은 26.1%가 '특별한 것이 없다'고 답해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여전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는 필요하나 여전히 양성평등하지 못한 현실과 자녀 양육이 여성의 사회 참여의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1) 정치부문의 여성 참여를 위한 제언

여성의 정치참여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GEM지수⁹⁾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 리더십 훈련 등 교육의 마련이 필요하다. 선거에 있어 선출직 의원의 경우 여전히 여성이 없는 현실은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회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교육과 함께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이 중요하다.

둘째, 전통적인 역할에 여성을 묶어 두는 제주도의 전형적인 가부장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공직내 여성관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여성 공무원의 연령별 현황을 통해 31~40대 연령층의 주요부서 배치가 평균 19.6%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30%로 높이는 인사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 여성공무원의 교육 기회 확보 방안 등 할당제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의 위원회 참여 확대는 이미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다. 특히 2006년 7월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일부 위원회의 경우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직 여성 발굴 등 전문직 여성을 위한 자원화가 필요하다.

9) GEM지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05년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의 연도별 순위 변화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인간개발지수 (HDI)	남녀평등지수 (GDI)	여성권한척도(GEM)				
			순위	여성의원 비율(%)	여성행정 관리직(%)	여성전문 기술직(%)	남녀소득비 (남성'1기준)
2005	28/177	27/140	59/80	13.0	6.0	39.0	0.48
2004	28/177	29/144	68/78	5.9	5.0	34.0	0.46
2003	30/175	29/146	63/70	5.9	5.0	34.0	0.46
2002	27/162	29/146	61/64	5.9	5.0	34.0	0.45
2001	27/162	29/146	61/64	5.9	5.0	31.0	0.45
2000	31/174	30/143	63/70	4.0	4.7	31.9	-
1999	30/174	30/143	78/102	3.7	4.2	45.0	-
1998	30/174	37/163	83/102	3.0	4.4	31.9	-

GDI는 교육수준, 소득 및 의료수준 등에 있어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평균수명, 문자해득률, 취학률, 남녀소득격차 등을 산출되므로 우리나라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HDI 역시 수명, 문자해득률, 취약율, 1인당 GNP 등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지수로 국제적으로 볼 때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여성의원의 비율이나 여성행정 관리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하위권에 속한다.

2) 경제부문의 여성 참여를 위한 제언

여성의 경제부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거나 연령이 높거나 직업능력면에서 부족한 집단에 여성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그와 상반되게 고학력 여성의 경우 출산과 결혼 등으로 경력단절을 막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경우 잦은 노동시장의 유출입을 통해 지속적인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경력축적의 기회가 많지 않으며 경력이나 기술의 축적과는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제조업에서도 기능인력이나 단순노무인력, 서비스업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경력축적이나 임금의 증가나 향후 좋은 직업으로 노동이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의 경제부문에 있어 현재 40대 여성의 평균 학력은 고졸이다. 그러나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로 최근 여성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아진 것에 비하여 취업에 있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취업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은 실업자 구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결국 남성중심적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으로 다양한 여성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비정규직의 여성화’, ‘여성의 비정규직’은 사회문제로 최근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¹⁰⁾의 마련에 따라 경제영역에 있어 여성의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영역의 다양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우선 근로시간에 있어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상 노동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탄력근무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10) 2006년 11월 30일 통과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은 몇 가지 현행 법안과 다른 점이 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차별금지	없음	신설. 노동위원회 통한 사정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
기간제근로자	반복갱신규제없음 근로계약기간 상한 1년	사용기간2년. 초과시 무기근로계약기간 간주 근로계약기간 1년 규정 폐지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규제없음	초과근로 1주 12시간으로 제한
파견근로자	파견기간최장 2년 2년초과시 사용사업주에 고용의제적용	최장 2년으로 현재와 동일 2년 초과시 고용의무적용 파견금지업무 파견시에도 고용의무적용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나누는 효과와 함께 여성의 경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시간제근로에 대하여 네덜란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일 근무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동등대우법(1996)', 고용주와 근로자가 다양한 형태의 근무 계약을 맺도록 촉진한 '근로시간법(1996)' 제도적 마련을 통해 탄력 근무에서 오는 제약을 최소화 하고 있다.

또한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무제도 역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근무형태), 집중근로시간 프로그램(일 주일이 걸리는 업무를 5일 이내에 끝내거나 2주일이 걸리는 업무를 10일 이내에 끝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근무방식)등의 도입을 지역적 수준에서 고려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시설과 아동보육을 위한 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영·유아는 물론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 대한 안전권 확보를 통해 점진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러한 시설을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여 공교육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지역에서도 이러한 시설들이 보편화 될 수 있는 연건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출산·육아 친화경영을 도입해야 한다. 보육지원제로 사내 보육시설 마련과 휴가·휴직제도의 정착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별도로 부친휴가제(배우자의 출산간호휴가제) 등의 도입이 지역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자원봉사·단체 활동 참여 부문의 여성 참여를 위한 제언

여성의 자원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수준에 있어 여성의 자원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들이 주로 활동 하고 있는 자원활동과 단체활동은 불런티어리즘(volunteerism)의 용어로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활동은 두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구호적·시혜적 의미와 함께 자아실현과 자기발전을 위한 이기적인 활동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근 자원활동으로 통칭되어 불리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들의 자원활동·단체활동은 주로 단체나 기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성의 자원활동·단체 활동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 자원활동·단체 활동을

위한 모집과 배치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각 센터를 중심으로 자원활동·단체 활동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매뉴얼의 개발을 통해 자원활동·단체 활동의 극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자원활동·단체의 전문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현재 제주도내 자원활동기관 및 여성 단체는 유사하거나 정작 활동의 영역이 중복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자원활동·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조직의 전산화는 물론 외부 기관과 개인을 연결하는 연결망 등의 마련은 재교육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함께 사회참여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각의 영역들을 위해 가장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화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영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우선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과 함께 후속작업으로 각 영역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방안을 심도 깊게 다루어 할 수 있는 시작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http://www.ipu.org/wmn-e/suffrage.htm>
노동리뷰. 2006년 12월 (통권 제24호)
박수미·정진주·박선영, 2005. 「젠더문제화 여성의 노동참여-노동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문희·김미숙·박세경·최은영·임정기, 2004. 「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경제 2006. 4.19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4/e2006041917305470290.htm>
엔터니 기든스, 1996.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여성가족부, 2006.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2006~2010)
장지연·이정두·최은영·김지경, 2005. 「일·가족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정영태, 2005.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지표개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 위원회
<http://jj.election.go.kr/sub/index.php?mid=0213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통계청, 2006. 경제활동연보
_____. 2005. 생활시간 조사
행정자치부 여성팀, 2006.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행정자치부
_____, 2006. 2005 자원봉사단체 현황, 행정자치부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4. 12 조례 제256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8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의 보장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공보육을 실현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보호자·시설관계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모든 도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영유아보육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 3인으로 하고, 제6호 관계공무원은 1인, 제7호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도의회 의원은 2인으로 하며, 그 외 각 호의 위원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6. 관계공무원
7.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도의회 의원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제주도의 영유아보육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사전에 선정기준을 정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제주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1. 영유아 보육발전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제주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특수전담시설 지정 심의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9조(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로 한다.

③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 3 장 보육정보센터

제11조(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제주도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상담
8.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보육관련 정보지 발간 및 보급 등 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9. 보육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지도
10.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3조(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등) ①센터의 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센터의 장은 당해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④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고, 제16조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14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보육전문요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 요원이 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고, 제16조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명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종사자 배치 등) ①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영유아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종사자의 자격 및 직무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보육사업안내에 따른다.

③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고, 제16조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명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위탁)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2.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신청 및 선정절차 등 세부 사항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 만료 시 보육에 관한 철학,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주민참여에 대한 계획 등을 평가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5. 기타 수탁기관이 약정서 위반 및 제주도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센터 운영위원회) 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보육전문가, 보호자,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기타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주민참여)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 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 및 40인 이상 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육교사 대표 및 학부모 대표는 반드시 2인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②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설치) ①도지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계획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도지사는 제주도내 유휴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법 제26조에 의거 영아, 장애아, 야간, 24시간 및 시간제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 공립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28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공립보육시설의 보육대상, 보육시간 등 세부 운영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9조(입소순위) 공립보육시설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거 입소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2.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차 상위 계층 영유아
4.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5.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차 상위 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의 영유아
6.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
7.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영유아
8. 입양된 영유아
9.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제30조(보육료) 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는 매년 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수납 한도액 범위 내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에서 결정한다.

제31조(운영위탁) ①도지사는 제주도가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위탁신청 및 위탁결정 절차, 위탁사항 변경 등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정한다.

제32조(수탁자의 임무) ①수탁자는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행위의 금지) ①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도지사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항을 위배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위탁의 취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32조 내지 제33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35조(지도감독)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비 용

제36조(비용의 보조) ①도지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

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장애아 시설 및 시간 연장, 방과 후, 휴일 등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2.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비용
 3.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에 따른 대체인력 및 시설장 보육교사를 제외한 기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5. 농어촌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
 6. 교재·교구비
 7. 기타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②제11조에 의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도비 및 자체수입으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7조(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 7 장 보육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9조(보육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주민참여) ①도지사는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실시하고 이를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의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보수교육) 도지사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하여 운영 위탁한 센터 및 제주도 공관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한다.

[별표 1]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14조 관련)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가정보육시설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2.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 가족부령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 학교 과정)에서 특수 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사. 위의 가.~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 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 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별표 2]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 관련)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다. 가정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 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제외한다)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그 외의 보육시설은 동 시행령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국·공립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나.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 라.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 (1)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 면적(놀이대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 ①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③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④ 보육시설은 환기·채광·조명·온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 ①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 ②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③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 ①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②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③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 ①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페타이어 블록도 가능함)에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물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 또는 옥상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를 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옥외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i) 놀이시설물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ii)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iii)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영유아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iv)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v)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영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vi)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 보육시설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 ①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 ④ 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보육실에 설치된 고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때에는 물건이 추락하지 아니 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 서는 아니된다.
 -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 ⑦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페트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 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인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 다)은 장애아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3)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 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5)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3]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제21조 관련)

1.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와 그 수
 - 가. 보육시설의 장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 나. 보육교사
 -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6) 취학아동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 다.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어야 한다.
 - 라. 영양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행정시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마. 취사부 영유아 40인이상 80인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 바.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 사.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 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
 - 다.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4]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 관련)

1. 명칭

- 가.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나. 이 명칭은 국·공립보육시설이나 행정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보육시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시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육시설의 운영

가. 보육대상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의 작성·비치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간 등

- (1)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2) 보육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보육시설의 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영규정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육료 수납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육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비용의 지출

- (1) 보육시설의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때에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3)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가입

- (1)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2)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3) 보육시설종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4)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시설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6)·(10)·(11) 및 (13) 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 (3) 시설운영일지
-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 (5) 예산서 및 결산서
-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7)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8)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 (10)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 (11) 생활기록부·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 (12)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 (13) 안전점검표
- (14)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3. 안전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 (1)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3) 보육시설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 (5) 보육시설의 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6)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7)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

- (1)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보육시설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3)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설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때에는 접촉부위를 씻어야 한다.

다. 차량안전관리(차량은 운영하는 경우)

- (1) 차량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2) 운전기사는 채용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보육시설에서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안전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차량운행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6)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7) 퇴원 차량 운행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자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 용 신 청 자 명 부

접수 순위	성명	성별	생년 월일	보호자 성명	대상별	주소	전화 번호	입소 일자	기록자 (인)
<p>비고 : 법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자녀), 모부자(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자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p>									

부록2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785호 일부개정 2005. 12.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보육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

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④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보육정보센터) ①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육개발원)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육실태조사)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내용·수립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장 보육시설종사자

제17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제22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제22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12.30]]

제23조 (보수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 ②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25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②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④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⑤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
-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여성가족부·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 ③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 제27조 (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2005.12.29] [[시행일 2006.3.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시행일 2006.3.30]]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시행일 2006.3.3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시행일 2006.3.30]]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시행일 2006.3.30]]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시행일 2006.3.30]]
- ②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 (보육과정) ①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여성가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 ③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29조의2 (보육시설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30조 (보육시설 평가인증)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③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④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 (급식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6장 비용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 ③제12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제37조 (사업주의 비용부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38조 (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39조 (세제지원) ①제1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 ②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7장 지도 및 감독

- 제41조 (지도와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 제42조 (보고와 검사)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으로서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제48조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4.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제48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 2006.12.30]]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본조제목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 제49조 (청문)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8장 보칙

제50조 (경력 인정) ①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52조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1.30]]

제53조 (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9장 벌칙

제54조 (벌칙)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제54조 (벌칙)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 1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시행일 2006.12.30]]
 - 1의3.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시행일 2006.12.30]]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 (과태료)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29]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3.30]]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칙 [1991.1.14 제43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업장육아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4조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5조 (미인가탁아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탁아시설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6조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유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등이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재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부칙 [1997.8.22 제5358호(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하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설치인가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인가의 취소등)”을“(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⑤생략

⑥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개정규정 중 “시설을 폐쇄”를 “인가를 취소”로 본다.

⑦및 ⑧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2호]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9.7 제60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 (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

◇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단서,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중 각각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제13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6조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단서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2호]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

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85호]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제46조, 제48조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 여 연 구 진

연구책임	정 영 태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공동참여	임 소 진 제주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쇄일/ 2006. 12

발행일/ 2006. 12

발행인/ 고부언(제주발전연구원장)

발행처/ 제주발전연구원

690-0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블럭 1롯데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2, 3층

Tel. 064-726-0500 Fax : 064-751-2168

홈페이지 : <http://www.jdi.re.kr>

E-mail : lucy@jdi.re.kr

인쇄처/ 온누리디앤피 (Tel. 722-0086)

ISBN 978-89-6010-019-0 9333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無斷 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